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책임자: 라 정 주 선임연구위원

2017. 6

Pi-TOUCH INSTITUTE

목 차

요 약	1
I. 서 론	6
1. 연구배경 및 목적	6
2. 연구방법 및 범위	7
II.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 및 사례	9
1.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	9
2.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사례	13
III. 분석모형 설계	20
1. 모형의 환경	20
가. 모형의 틀	20
나. 기호 정의	21
다. 효용 및 생산함수	22
라. 자본 축적	23
2. 모형의 균형	23
가.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23
나.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	31
다. 미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34
라. 미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	36
마. 모형의 解	38

IV. 정량분석 **39**

- 1. 분석절차 및 파라미터 값 39
 - 가. 분석절차 39
 - 나. 파라미터 값 40
- 2. 분석결과 43
 - 가. 정태분석결과 43
 - 나. 동태분석결과 46
 - 다. 민감도 분석 49

V. 정책적 대안 **52**

- 1. 내부거래 규제 방안 52
 - 가. 공개입찰의 원칙 52
 - 나. 입찰평가 53
 - 다. 입찰정보 공개 53
 - 라. 적용범위 53
- 2. 부당내부거래 규제 방안 54
 - 가. 총수일가의 초과지분율(피지원기업-지원기업)에 대한 배당 금지 ... 54
 - 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조직 강화 54
 - 다.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권 강화 55
 - 라. 전속고발권 폐지 55
 - 마. 엄중한 책임추궁 제도 도입 및 강화 58
 - 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59
 - 사.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규제 근거 개정 60

참고문헌 **61**

표 목 차

〈표 2-1〉 민간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	9
〈표 2-2〉 상장여부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단위: %)	9
〈표 2-3〉 내부거래 비중에 따른 계열회사 수 분포(2015년 말 기준)	10
〈표 2-4〉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2015년 말 기준)	10
〈표 2-5〉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2015년 말 기준)	11
〈표 2-6〉 내부거래 금액이 높은 업종(2015년 말 기준)	11
〈표 2-7〉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내부거래를 통한 기존 거래 중소기업 퇴출 사례(CJ)	14
〈표 2-8〉 택배운송장 구매대행업 시장에서 기존 중소기업과 거래 중단 후 계열사와 거래 사례(현대)	14
〈표 2-9〉 IT서비스 시장에서 부당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사례(SK)	16
〈표 2-10〉 자동화설비 제조 시장에서 사무용 장비 부당지원 사례(삼성)	17
〈표 2-11〉 시스템 통합 시장에서 친족 분리기업 일감몰아주기 사례(한진)	18
〈표 2-12〉 금융자동화기기 시장에서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매개로 거래한 사례(롯데)	19
〈표 3-1〉 기호 정의	21
〈표 4-1〉 파라미터 값	42
〈표 4-2〉 주요 거시 지표 현황(2014년)	44
〈표 4-3〉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개방 주요 효과(실물단위)	45
〈표 4-4〉 거래비용 축소 수준에 따른 모형의 균형 변화	49
〈표 4-5〉 정태분석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50
〈표 4-6〉 동태분석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51

그림 목 차

[그림 2-1] 총수입가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2015년 말 기준)	12
[그림 2-2] 총수2세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2015년 말 기준)	12
[그림 2-3] 기존 중소기업과 거래 중단 후 계열사와 거래 사례(개념도)	13
[그림 2-4]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자유경쟁시장 생태계 파괴 사례(개념도)	15
[그림 2-5] 친족 분리기업 일감몰아주기 사례(개념도)	17
[그림 2-6]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통한 간접거래 사례(개념도)	18
[그림 3-1] 모형의 틀	20
[그림 3-2]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30
[그림 3-3]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	33
[그림 3-4] 미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35
[그림 3-5] 미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	38
[그림 4-1] 동태분석절차	40
[그림 4-2]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개방 효과(변화율)	44
[그림 4-3] 거래비용 축소에 따른 모형의 균형 변화($\sigma = 50\%$ 일 경우)	47

요약

1. 서론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경제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우리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쪽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옳은지 여부에 따라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분석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바람직한 거래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고용 없는 성장'의 중요한 원인을 도출하였다.

2.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 및 사례

가.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 13.24%에서 2015년 11.7%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금액기준(159.6조)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2.1-24.52%)은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7.7-8.62%)보다 훨씬 높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은 에스케이(24.2%), 포스코(18.8%), 태영(18.5%), 현대자동차(18%), 케이티(15.6%) 순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조경서비스업(64.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6%), 정보서비스업(53.4%), 부동산업(52.9%), 사업지원서비스업(50.7%) 순으로 모두 서비스업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인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34.6%로 약 3배 더 높다.

나.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사례

첫 번째 유형은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시작한 사례이다.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CJ CGV가 기존에 거래해오던 중소기업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설립한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한 경우와 택배운송장 구매대행업 시장에서 현대로지스틱스가 기존에 거래해오던 중소기업과 계약을 해지하고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시작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 유형은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하여 획득된 이점을 이용하여 제3시장의 자유경쟁 생태계를 파괴시킨 사례이다. IT서비스 시장에서 SK텔레콤을 비롯한 여러 계열사로부터 부당하게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를 지원받은 SK기업집단 계열사가 제3시장에서 공개입찰을 유리한 조건으로 참가하여 해당시장의 생태계를 파괴시킨 경우와 삼성테크윈으로부터 분사된 기업이 140개 품목의 사무용 장비를 삼성테크윈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자동화설비 제조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 유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로부터 분리된 친족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이다. 시스템 통합 시장에서 한진그룹의 계열사였다가 분리된 친족기업이 한진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네 번째 유형은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이다. 금융자동화기기 시장에서 롯데피에스넷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하지 않고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거쳐 비싸게 구매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3.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가. 정태분석결과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생산(GDP)과 자본이 각각 184.5조원, 146.0조원 늘어나고, 고용은

1,514,127명이 증가한다.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성이 높은 독립기업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막혀 시장에 나타날 수 없지만,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와 독립기업이 모두 다 시장에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숙된 시장에서는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여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확인할 수 없다.

나. 동태분석결과

미성숙된 시장에서 성숙된 시장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지속되면, 총 생산은 늘어나는데 총 노동수요는 줄어들게 되는 ‘고용 없는 성장’이 유발된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현상과 일치된다.

4. 정책적 대안

가. 내부거래 규제 방안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부담해야 될 거래비용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련 정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을 포함하여 능력이 있는 기업이 공개입찰에서 낙찰될 수 있도록 하려면 독립된 평가기관이 필요하다. 하나의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립된 평가기관을 설립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입찰에 관련된 정보를 참가자에게 모두 똑같이 제공한다는 것

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계열 분리된 기업 간에 수익계약을 통한 거래도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의 범위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상기와 같이 통제할 경우 일부 기업을 계열사로부터 분리시켜 거래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 부당내부거래 규제 방안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 방안은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방안은 대기업집단의 강력한 저항과 정부 당국의 실천 의지와 맞물려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계열사(지원기업)에서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피지원기업)로 이익을 전환시킴으로써 사익편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수일가가 지원기업 대비 피지원기업에 대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대해서 배당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국 예하에 있는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부당내부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대기업집단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의조사권을 강제조사권으로 변경시키고, 부당내부거래를 포함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일하게 광역자치단체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넷째,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째,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엄중한 책임추궁 방안으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여섯째,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불공정 행위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로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일곱째,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를 제3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경제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우리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쪽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옳은지 여부에 따라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도 재정립이 필요하다.¹⁾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Yiu et al.(2007), Khanna and Yafeh(2007), Buyschaert et al.(2008)의 연구에 따르면, 시장이 미성숙하여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될 경우 기업들은 내부에 계열사를 만들어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자체 조달하지만, 시장이 성숙된 경우는 기업집단을 형성하여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업집단이 필요 없게 된다. 즉, 시장이 미성숙하여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될 경우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시장이 성숙된 경우에는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는 정당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분석한 Chang and Hong(2000)의 연구도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1985년부터 1996년까지의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업집단은 내부거래를 통하여 유무형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미성숙된 시장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연구는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념적으로 접근하거나 개별기업단위의 실증분석에 그치고 있다. 보다 분석적이면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을 분석한 기존연구는 김승일·홍의경(2012), 박상인 등 3명(2014), 김승일 등 4명(2015) 등이 있다. 김승일·홍의경(2012), 박상인 등 3명(2014)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있고, 김승일 등 4명(2015)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과 일치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리분석이 부족하다.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분석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바람직한 거래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고용 없는 성장'의 중요한 원인을 도출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정량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분석모형은 Lucas(1978)의 기업분포 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분석모형의 경제주체는 가계와 최종재 생산기업으로 나뉘어진다. 가계의 구성원은 두 가지의 선택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 번째는 직업선택의 문제로 직장인이 될 것인지 중간재 생산기업가가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의 기업을 경영할 것인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독립기업을 경영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또한, 분석모형의 환경은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숙된 시장과 미성숙된 시장으로 구분된다.

상기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보정(Calibration)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절차는 정태분석절차와 동태분석절차로 나누어진다. 정태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의 균형조건들에 파라미터 값을 입력한다. 그 다음 모형의 장기균형조건들을 도출한 후 Matlab의 'fsolve' solver를 이용하여 解를 구한다.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장기균형 解와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의 장기균형 解를 비교하여 각 변수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둘째, 동태분석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에서는 정태분석절차와 동

일하게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고 모형의 장기 균형조건들을 도출한 후 Matlab의 'fsolve' solver를 이용하여 解를 구한다. 2단계에서는 우선 1단계에서 도출한 장기균형 解를 각 변수들의 초기 값으로 선정한다. 그 다음 'dynare' 프로그래밍 언어에 맞게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구성하여 Matlab에 입력한다. 3단계에서는 구성된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Matlab에서 구동시켜 거시변수들의 解를 도출한다.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 시장이 미성숙된 상태에서 성숙해질 때 모형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II장에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에 이루어지는 내부거래 현황과 구체적인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설계하며, IV장에서는 도출된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정량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앞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II.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 및 사례2)

1.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

〈표 2-1〉은 민간대기업집단의 2011-2015년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을 보여준다. 여기서 대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자산총액의 합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고, 내부거래 비중은 동일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총매출액(상품 및 용역거래에 의한 매출) 중 계열회사 간 이루어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³⁾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 13.24%에서 2015년 11.7%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금액기준(159.6조)으로 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표 2-1〉 민간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내부거래 금액(조원)	186.3	185.3	181.5	181.1	159.6
내부거래 비중(%)	13.24	12.30	12.46	12.4	11.7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6)

〈표 2-2〉는 상장여부에 따른 2011-2015년 내부거래 비중을 보여준다.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2.1-24.52%)은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7.7-8.62%)보다 훨씬 높다.

〈표 2-2〉 상장여부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상장사	24.52	22.23	23.53	23.3	22.1
상장사	8.62	8.11	7.75	7.9	7.7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6)

2) 본 내용의 일부는 라정주·한원석(2017)의 연구로부터 발췌한 것이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 합은 2016년 9월 29일부로 10조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표 2-3〉은 2015년 말 기준 내부거래 비중에 따른 계열회사 수 분포를 보여준다. 내부거래 비중이 15% 미만인 계열회사 수는 464개로 전체 계열회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가장 높다. 극단적인 경우로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회사 수는 67개나 된다.

〈표 2-3〉 내부거래 비중에 따른 계열회사 수 분포(2015년 말 기준)

구분	계열회사 수(전체 1,274개)	비중(%)
내부거래 비중	0-15%	464
	15-30%	119
	30-50%	110
	50-80%	136
	80-100%	154
	100%	67

* 주: ① 내부거래가 있는 계열회사 수는 1,050개로 전체 1,274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4%임
 ② 내부거래가 없는 계열회사 수는 224개로 전체 1,274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6%임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6)

〈표 2-4〉는 2015년 말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을 보여준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은 에스케이(24.2%), 포스코(18.8%), 태영(18.5%), 현대자동차(18%), 케이티(15.6%) 순이다.

〈표 2-4〉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2015년 말 기준)

구분	에스케이	포스코	태영	현대자동차	케이티
내부거래 비중(%)	24.2	18.8	18.5	18	15.6
내부거래 금액(조원)	33.3	11.5	0.6	30.9	4.1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6)

〈표 2-5〉는 2015년 말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보여준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조정서비스업(64.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3.6%), 정보서비스업(53.4%), 부동산업(52.9%), 사업지원서비스업(50.7%) 순으로 모두 서비스업이다.

〈표 2-5〉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2015년 말 기준)

구분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조원)
사업시설관리/조경서비스업	64.5	0.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63.6	7.6
정보서비스업	53.4	0.6
부동산업	52.9	3.7
사업지원서비스업	50.7	3.1

* 주: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6)

〈표 2-6〉은 2015년 말 기준 내부거래 금액이 높은 업종을 보여준다. 내부거래 금액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1.8조원), 종합 건설업(14.2조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장비 제조업(13조원), 1차 금속 제조업(10.5조원),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9.9조원) 순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이다.

〈표 2-6〉 내부거래 금액이 높은 업종(2015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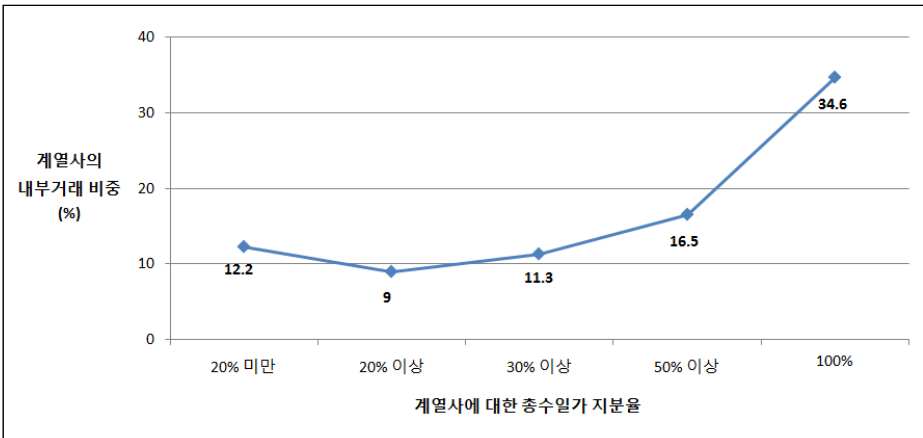
구분	내부거래 금액(조원)	내부거래 비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1.8	17
종합 건설업	14.2	14.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장비 제조업	13	5.1
1차 금속 제조업	10.5	15.7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9.9	12.3

* 주: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6)

〈그림 2-1〉은 2015년 말 기준 총수일가 지분율에 따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인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34.6%로 약 3배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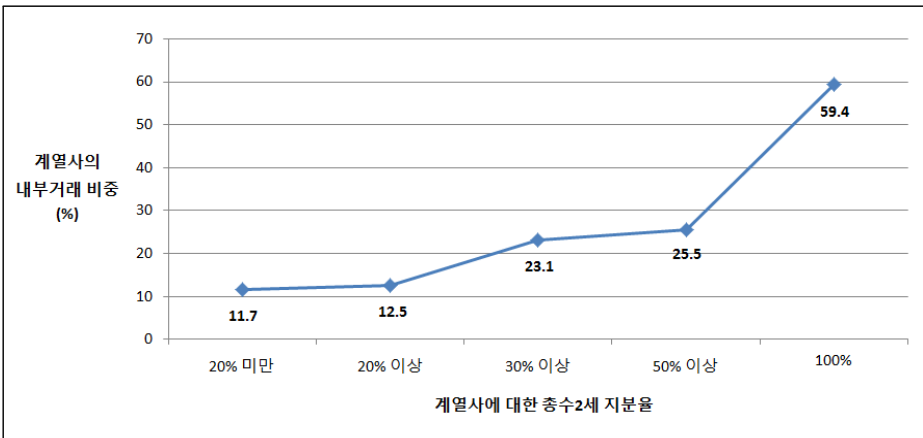
[그림 2-1] 총수일가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2015년 말 기준)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6)

[그림 2-2]는 2015년 말 기준 총수2세 지분율에 따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보여준다. 총수일가의 경우처럼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인 반면, 총수2세 지분율이 100%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9.4%로 약 5배 더 높다.

[그림 2-2] 총수2세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2015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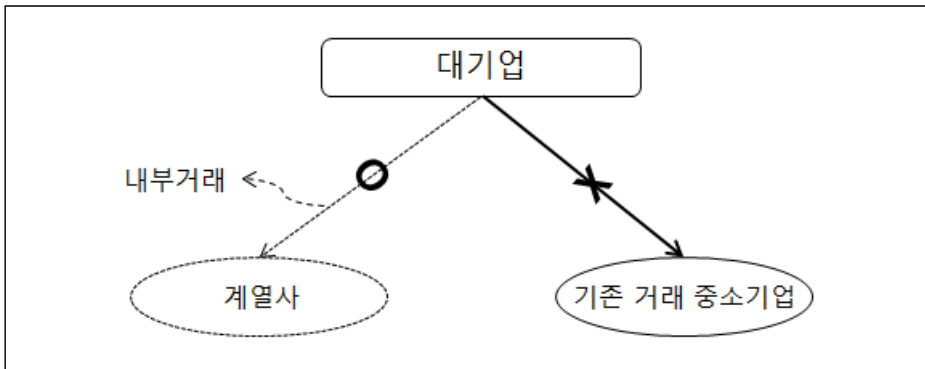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6)

2.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사례

다음은 내부거래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핵심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그림 2-3]은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시작한 사례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대기업이 발주한 거래량을 중소기업이 수주하여 오랜 기간 거래를 하고 있는데, 해당 대기업이 기존 거래 중소기업과 계약을 종료하고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이다.

[그림 2-3] 기존 중소기업과 거래 중단 후 계열사와 거래 사례(개념도)



* 자료: 자체 분석

[표 2-7]은 이에 대한 첫 번째 사례로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CJ CGV가 기존에 거래해오던 중소기업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설립한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한 경우이다. CJ CGV는 약 7년 동안 거래를 해오던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2005년 7월에 신설된 계열사 자산커뮤니케이션즈와 내부거래를 시작함으로써 1979년에 설립되어 전문적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수행해오던 기존 거래 중소기업을 시장으로부터 퇴출시켰다. 이로 인해 자산커뮤니케이션즈는 설립 2년만인 2007년에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여 업계 1위 사업자가 되었고, 2005-2011년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업종 평균인 6.73%에 비해 매우 상승하였다.

〈표 2-7〉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내부거래를 통한 기존 거래 중소기업 퇴출 사례(CJ)

개요	CJ 계열사 간 내부거래		
	발주기업	수주기업	내부거래 내용
	CJ CGV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거래량의 9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주요내용	CJ CGV는 약 7년 동안 거래를 해오던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2005년 7월에 신설된 계열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내부거래를 시작함으로써 1979년에 설립되어 전문적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수행해오던 기존 거래 중소기업을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킴 *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설립 2년만인 2007년에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여 업계 1위 사업자가 됨 * 2005-2011년 연 평균 영업이익률: 50.14%(재산커뮤니케이션즈), 6.73%(업종 평균)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2016-293호

〈표 2-8〉은 이에 대한 두 번째 사례로 택배운송장 구매대행업 시장에서 현대로지스틱스가 기존에 거래해오던 중소기업과 계약을 해지하고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시작한 경우이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수기식 택배운송장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해오던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택배운송장 거래 경험이 전혀 없던 계열사 쓰리비와 내부거래를 시작하였다. 또한, 현대로지스틱스는 계열사 쓰리비에게 수기식 택배운송장의 구매단가를 평균적인 수준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해주었다. 이로 인해 쓰리비의 마진율(27.6%)은 다른 구매대행업체들의 마진율(0~14.3%)보다 매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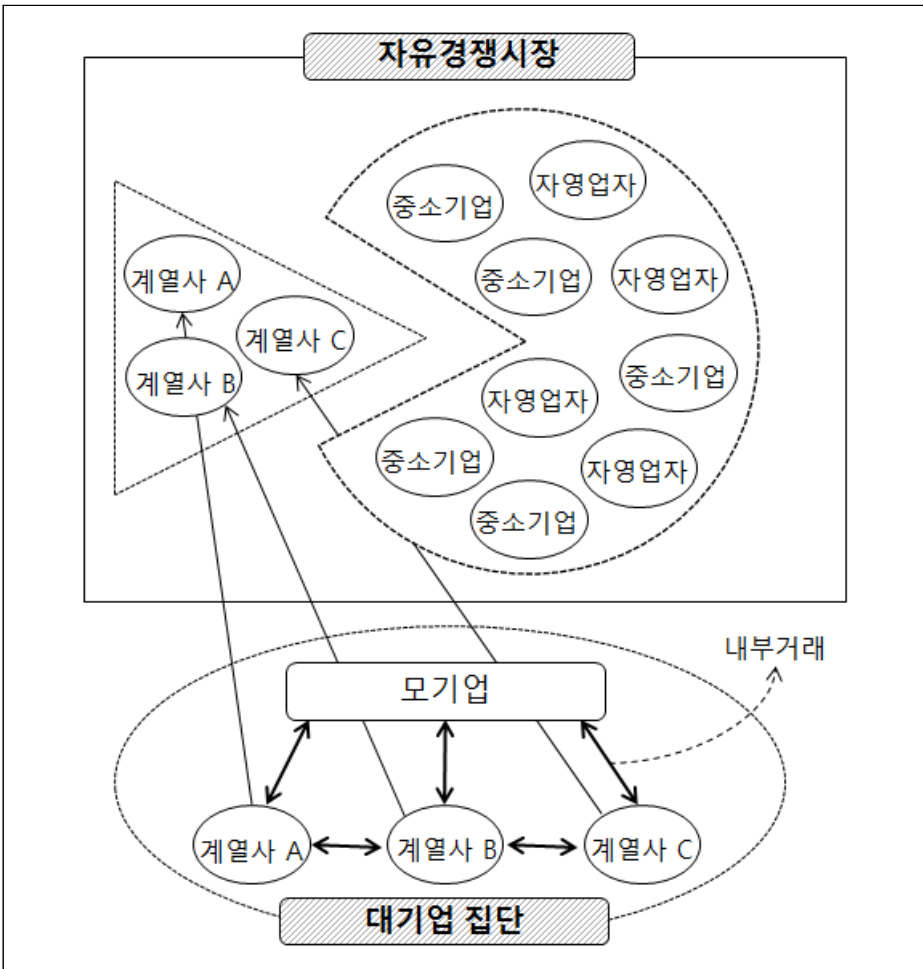
〈표 2-8〉 택배운송장 구매대행업 시장에서 기존 중소기업과 거래 중단 후 계열사와 거래 사례(현대)

개요	현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발주기업	수주기업	내부거래 내용
	현대로지스틱스	쓰리비	수기식 택배운송장 전량을 수의계약으로 납품
주요내용	현대로지스틱스는 수기식 택배운송장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해오던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택배운송장 거래 경험이 전혀 없던 계열사 쓰리비와 내부거래를 시작하고, 수기식 택배운송장의 구매단가를 평균적인 수준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해줌 * 택배운송장 구매대행업체의 마진율: 27.6%(쓰리비), 0~14.3%(다른 구매대행업체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2016-189호

[그림 2-4]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하여 획득된 이점을 이용하여 제3시장의 자유경쟁 생태계를 파괴시킨 사례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대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사로부터 인력, 자금, 재화 등을 내부거래를 통하여 부당하게 지원 받은 계열사가 획득된 이점을 이용하여 제3시장의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상당수 거래량을 독점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해당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경우이다.

[그림 2-4]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자유경쟁시장 생태계 파괴 사례(개념도)



* 자료: 자체 분석

〈표 2-9〉는 이에 대한 첫 번째 사례로 IT서비스 시장에서 SK텔레콤을 비롯한 여러 계열사로부터 부당하게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를 지원받은 SK기업집단 계열사가 제3 시장에서 공개입찰을 유리한 조건으로 참가하여 해당시장의 생태계를 파괴시킨 경우이다. SK씨앤씨는 IT서비스 시장에서 5년 내지 또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SK텔레콤, SK건설, SK증권,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마케팅앤컴퍼니로부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를 비계열사 보다 높게 책정 받고, SK텔레콤으로부터는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비를 타계열사 보다 높게 책정 받은 후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및 공공분야의 공개입찰에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참가하여 많은 거래량을 수주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중소기업들이 해당시장에서 퇴출되었고, SK씨앤씨의 2006-2010년 연 평균 영업이익률(7.49%)은 업종 평균(4.86%)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표 2-9〉 IT서비스 시장에서 부당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사례(SK)

개요	SK 계열사 간 부당지원(내부거래)		
	지원기업	피지원기업	지원내용
	SK텔레콤, SK건설, SK증권,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마케팅앤컴퍼니	SK씨앤씨	IT서비스 시장에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를 비계열사 보다 높게 책정
	SK텔레콤	SK씨앤씨	IT서비스 시장에서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비를 타계열사 보다 높게 책정
주요내용	SK씨앤씨는 계열사와 5년 내지 또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및 공공분야에서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수주함 * 2006-2010년 연 평균 영업이익률: 7.49%(SK씨앤씨), 4.86%(업종 평균)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2012-227호

〈표 2-10〉은 이에 대한 두 번째 사례로 삼성테크윈으로부터 분사된 기업이 140개 품목의 사무용 장비를 삼성테크윈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자동화설비 제조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 경우이다. 1998년에 삼성테크윈으로부터 분사된 에스에프에이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전산장비, CAD S/W, 계측기

등의 140개 품목(가액 3.39억원)을 삼성테크윈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음으로써 자동화설비 제조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업자들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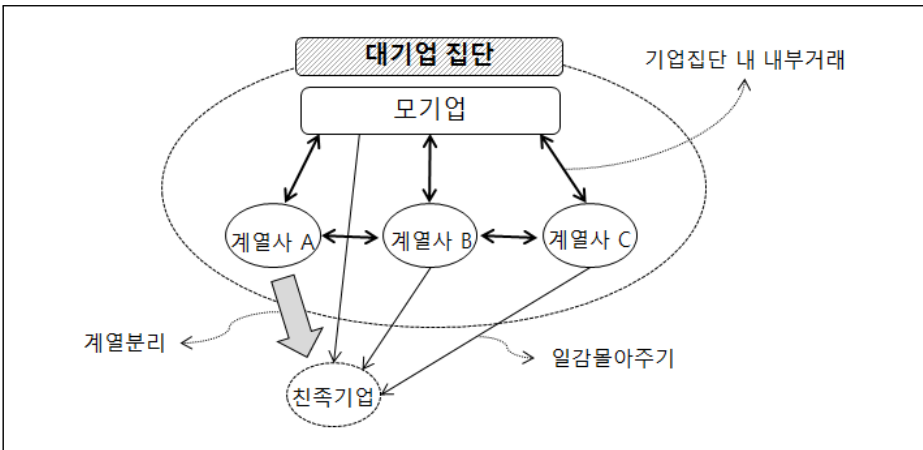
〈표 2-10〉 자동화설비 제조 시장에서 사무용 장비 부당지원 사례(삼성)

개요	삼성 계열사와 분사된 기업 간 부당지원(내부거래)		
	지원기업	피지원기업	지원내용
	삼성테크윈	에스에프에이	자동화설비 제조 시장에서 140개 품목의 사무용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
주요내용	1998년에 삼성테크윈으로부터 분사된 에스에프에이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전산장비, CAD S/W, 계측기 등의 140개 품목(가액 3.39억원)을 삼성테크윈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음으로써 자동화설비 제조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업자들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됨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2007-330호

[그림 2-5]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로부터 분리된 친족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대기업집단의 모기업을 포함한 다른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하던 계열사 A가 계열 분리된 후에도 친족기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는 경우이다.

[그림 2-5] 친족 분리기업 일감몰아주기 사례(개념도)



* 자료: 자체 분석

〈표 2-11〉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시스템 통합 시장에서 한진그룹의 계열사였다가 분리된 친족기업이 한진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은 경우이다. 시스템 통합 업무를 주업종으로 하는 싸이버로지텍(2000년 설립, 한진그룹의 친족기업)은 2014년 한진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된 이후에도 일감을 집중적으로 받아 매출액이 816억원(2014년)에서 1,173억원(2015년)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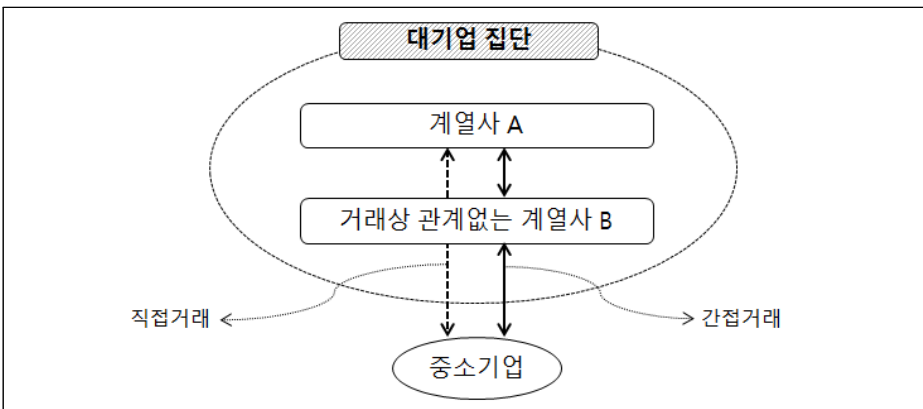
〈표 2-11〉 시스템 통합 시장에서 친족 분리기업 일감몰아주기 사례(한진)

개요	계열사에서 분리된 친족기업에 일감몰아주기(내부거래)		
	발주기업	수주기업	내부거래 내용
	한진그룹	싸이버로지텍 (계열사에서 분리된 친족기업)	시스템 통합 업무 거래량의 상당수를 친족기업에 몰아줌
주요내용	시스템 통합 업무를 주업종으로 하는 싸이버로지텍(2000년 설립, 한진그룹의 친족기업)은 2014년 한진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된 이후에도 일감을 집중적으로 받아 매출액이 816억원(2014년)에서 1,173억원(2015년)으로 크게 증가됨		

* 자료: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채이배)

[그림 2-6]은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업과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거래를 한 경우이다.

[그림 2-6]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통한 간접거래 사례(개념도)



* 자료: 자체 분석

〈표 2-12〉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금융자동화기기 시장에서 롯데피에스넷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하지 않고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거쳐 비싸게 구매한 경우이다. 롯데피에스넷은 금융지원서비스 사업을 위해 필요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3,534개를 제조사 네오아이씨피(중소기업)로부터 직접구매하지 않고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 롯데알미늄(주사업: 알루미늄 박의 제조 및 포장지의 인쇄)을 거쳐 적자(당기순이익: 2009년 기준 -11.54억원, 2011년 기준 -61.5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구매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2009년 롯데알미늄에 흡수합병된 롯데기공(주사업: 보일러 제조)의 악화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롯데기공은 이러한 계열사의 부당지원을 통해 경영상태가 크게 호전되었다(당기순이익: 2008년 기준 -881.21억원에서 2010년 기준 34.85억원으로 크게 증가).

〈표 2-12〉 금융자동화기기 시장에서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매개로 거래한 사례(롯데)

개요	롯데 계열사 간 부당지원(내부거래)		
	발주기업	수주기업	지원내용
	롯데피에스넷	롯데알미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하지 않고 중간유통 방식으로 비싸게 구매
주요내용	롯데피에스넷은 금융지원서비스 사업을 위해 필요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3,534개를 제조사 네오아이씨피(중소기업)로부터 직접구매하지 않고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 롯데알미늄(주사업: 알루미늄 박의 제조 및 포장지의 인쇄)을 거쳐 경영적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구매함(2009년 롯데알미늄에 흡수합병된 롯데기공(주사업: 보일러 제조)의 악화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그룹차원의 지원임) * 롯데피에스넷의 당기순이익: -11.54억원(2009년), -61.5억원(2011년) * 롯데기공의 당기순이익: -881.21억원(2008년), 34.85억원(2010년)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2012-22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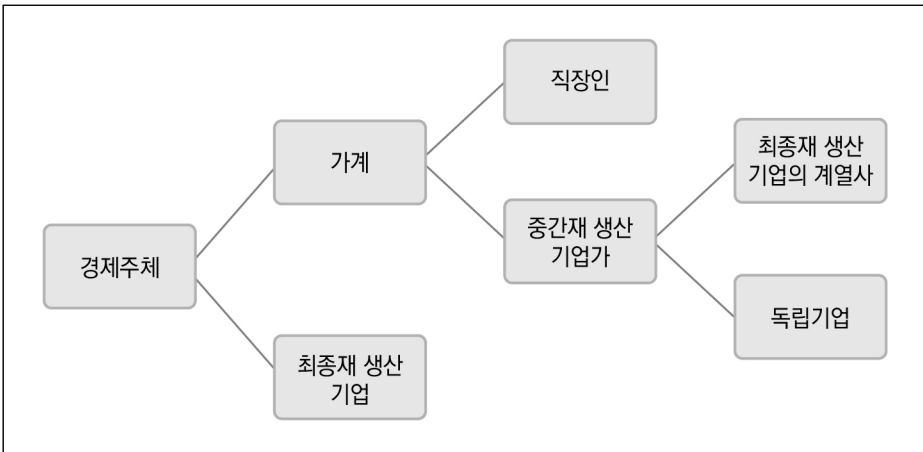
III. 분석모형 설계

1. 모형의 환경

가. 모형의 틀

[그림 3-1]은 분석모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준다. 분석모형의 경제주체는 가계와 최종재 생산기업으로 나누어진다.⁴⁾ 가계의 구성원은 두 가지의 선택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 번째는 직업선택의 문제로 직장인이 될 것인지 중간재 생산기업가가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⁵⁾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의 기업을 경영할 것인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독립기업을 경영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림 3-1] 모형의 틀



4) 본 연구에서는 최종재 생산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한다. 대기업이 중간재를 결합하여 최종재를 만드는 통상적인 생산과정을 고려할 때, 타당한 가정이다.
5) 여기서 중간재는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한다.

또한, 분석모형의 환경은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숙된 시장과 미성숙된 시장으로 구분된다. 즉, 성숙된 시장에서는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없으나, 미성숙된 시장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미성숙된 시장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 발주자와 수주자 간에 상호 정보 및 신뢰가 부족하고, 계약파괴 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재 생산기업이 갑자기 계약을 파괴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독립기업이 이를 모두 감수해야한다.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는 이와 같은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 즉,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에는 발생되지 않는다.

나. 기호 정의

분석모형에 사용될 각 기호는 <표 3-1>과 같이 정의된다.

<표 3-1> 기호 정의

기호	정 의	기호	정 의
U_t	가계의 t기 효용	χ_t	가계의 t기 투자량
C_t	가계의 t기 소비량	K_t	가계의 t기 자본량
n_t^s	직장인의 t기 노동공급량	w_t	t기 단위임금
γ	노동공급 파라미터	$\rho_{t,g}$	내부거래시장에서의 t기 중간재 가격
z_t	t기 경영능력	$\rho_{t,j}$	독립기업시장에서의 t기 중간재 가격
$g(z_t)$	경영능력에 대한 확률밀도함수	ν	자본소득분배율
Y_t	t기 최종재 생산량	α	기업가의 통제범위

(계속)

〈표 3-1〉 계속

기호	정 의	기호	정 의
ψ	독립기업의 중간재 생산비중	ϕ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와 독립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래비용 파라미터
$\ddot{y}_{t,g}$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의 t기 중간재 총 생산량	σ	독립기업에만 적용되는 거래비용 파라미터
$\ddot{y}_{t,j}$	독립기업들의 t기 중간재 총 생산량	r_t	t기 자본가격
$y_{t,b}$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또는 독립기업의 t기 중간재 생산량	\bar{k}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독립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자본량
$k_{t,b}$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또는 독립기업의 t기 자본량	β	시간에 대한 할인계수
$n_{t,b}$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또는 독립기업의 t기 노동수요량	δ	감가상각률
$\pi_{t,g}$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t기 이윤	$\pi_{t,j}$	독립기업의 t기 이윤

다. 효용 및 생산함수

가계의 효용함수는 식(1)과 같다.

$$U_t = \ln C_t - \frac{(n_t^s)^{1+\gamma}}{1+\gamma} \int_0^{\tilde{z}_t} g(z_t) dz_t \quad (1)$$

여기서, \tilde{z}_t 는 가계 구성원이면 누구나 타고나는 경영능력으로 직장인($z_t \in [0, \tilde{z}_t]$)과 기업가($z_t > \tilde{z}_t$)를 결정하는 임계값이다. 가계의 t기 효용은 소비를 통해 얻어지는 효용에서 노동공급을 통해 발생하는 비효용(Disutility)을 제외한 것이다. 여기서 노동공급은 가계구성원 중 직장인에 의해 제공된다.

최종재 생산기업의 생산함수는 식(2)와 같이 전형적인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함수 형태를 따른다.

$$Y_t = \left[(1 - \psi) \ddot{y}_{t,g}^\xi + \psi \ddot{y}_{t,i}^\xi \right]^{\frac{1}{\xi}} \quad (2)$$

여기서,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의 중간재 총 생산량과 독립기업들의 중간재 총 생산량 간의 대체탄력성 $\varepsilon = 1/(1 - \xi)$ 이다. t 기 최종재 생산량은 식(2)와 같이 계열사들의 중간재 총 생산량과 독립기업들의 중간재 총 생산량의 결합으로 산출된다.

중간재 생산기업의 생산함수는 식(3)과 같이 Lucas(1978)의 통제범위(Span-of-control) 모형 형태를 따른다.

$$y_{t,b} = z_t^{1-\alpha} (k_{t,b}^\nu n_{t,b}^{1-\nu})^\alpha \quad (3)$$

여기서, b 는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 g 와 독립기업 i 를 의미하고, $\alpha \in (0, 1)$ 이며, $\nu \in (0, 1)$ 이다. t 기 중간재 생산량은 기업가의 경영능력, 자본, 노동수요량에 의해 결정된다.

라. 자본 축적

가계의 투자량은 식(4)와 같다.

$$\chi_t = K_{t+1} - (1 - \delta)K_t \quad (4)$$

가계의 t 기 투자량은 $t+1$ 기 자본량에서 감가상각된 t 기 자본량을 제외한 것이다.

2. 모형의 균형

가.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독립기업

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없는 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모형의 균형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중간재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가계의 구성원 중 중간재 생산기업가는 식(5)와 같은 이윤극대화 문제에 봉착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거래비용과 독립기업의 거래비용이 $r_t\phi$ 로 동일하다는 것이다.⁶⁾

$$\max_{n_{t,b}, k_{t,b}} \pi_{t,b} = \left\{ p_{t,b} z_t^{1-\alpha} (k_{t,b}^\nu n_{t,b}^{1-\nu})^\alpha - w_t n_{t,b} - r_t (k_{t,b} + \phi) \right\} \quad (5)$$

먼저,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t 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동수요량과 자본량에 대한 1계 조건(First-Order Condition)을 구하여 정리하면, 식(6)-(7)과 같다.

$$n_{t,g} = p_{t,g}^{\frac{1}{1-\alpha}} z_t \theta (1-\nu) w_t^{\frac{\nu\alpha-1}{1-\alpha}} r_t^{\frac{-\nu\alpha}{1-\alpha}} \quad (6)$$

$$k_{t,g} = p_{t,g}^{\frac{1}{1-\alpha}} z_t \theta \nu w_t^{\frac{-(1-\nu)\alpha}{1-\alpha}} r_t^{\frac{(1-\nu)\alpha-1}{1-\alpha}} \quad (7)$$

여기서, $\theta = \alpha^{\frac{1}{1-\alpha}} \nu^{\frac{\nu\alpha}{1-\alpha}} (1-\nu)^{\frac{(1-\nu)\alpha}{1-\alpha}}$ 이다. 식(6)은 단위임금과 노동수요량이 반비례하는 노동수요함수이고, 식(7)은 자본가격과 자본량이 반비례하는 자본수요함수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는 최종재 생산기업과 내부거래 시 거래의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노동수요량 또는 자본량에 제약을 받지 않

6) 거래비용을 $r_t\phi$ 와 같은 고정비용이 아니라 $\phi k_{t,b}$ 와 같은 가변비용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데, 정성적으로 결과는 동일하다. 또한, 거래비용을 자본 대신 노동 관련 비용으로 고려해볼 수 있으나 정성적으로 결과는 동일하다.

는다는 것이다. 식(6)-(7)에서 도출된 노동수요량과 자본량을 식(3)에 대입하면, 식(8)과 같이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t 기 중간재 생산량이 도출된다.

$$y_{t,g} = z_t \rho_{t,g}^{\frac{\alpha}{1-\alpha}} \theta^\alpha v^{\nu\alpha} (1-\nu)^{(1-\nu)\alpha} w_t^{\frac{(\nu-1)\alpha}{1-\alpha}} r_t^{\frac{-\nu\alpha}{1-\alpha}} \quad (8)$$

다음은 독립기업의 t 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노동수요량과 자본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독립기업은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에 이루어지는 내부 거래시장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자본량이 \bar{k} 로 제한된다.⁷⁾ 따라서 독립기업의 t 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동수요량에 대한 1계 조건을 구하여 정리하면, 식(9)와 같은 노동수요함수가 도출된다.

$$n_{t,i} = \left[\frac{\rho_{t,i}}{w_t} z_t^{1-\alpha} \bar{k}^{\nu\alpha} (1-\nu)\alpha \right]^{\frac{1}{1-(1-\nu)\alpha}} \quad (9)$$

식(9)에서 도출된 노동수요량과 \bar{k} 를 식(3)에 대입하면, 식(10)과 같이 독립기업의 t 기 중간재 생산량이 도출된다.

$$y_{t,i} = z_t^{\frac{1-\alpha}{1-(1-\nu)\alpha}} \bar{k}^{\frac{\nu\alpha}{1-(1-\nu)\alpha}} \left[\frac{\rho_{t,i}}{w_t} (1-\nu)\alpha \right]^{\frac{(1-\nu)\alpha}{1-(1-\nu)\alpha}} \quad (10)$$

(2) 직업선택의 문제

가계의 구성원은 직장인과 기업가 중 어느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한다. 즉, 가계의 구성원은 직장인의 임금과 기업가의 이윤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하게 된다. \tilde{z}_i 는 직장인의 임금과 기업가의 이윤이 같을 때 도출되는 경영능력으로,

7) 독립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자본량 대신 노동량을 제한할 수 있으나 주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w_t = \max\{\pi_{t,g}(\tilde{z}_t), \pi_{t,i}(\tilde{z}_t)\}$ 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구체화하면 식(11)과 같다.

$$w_t = \max \left\{ \begin{aligned} & \tilde{z}_t \rho_{t,g}^{\frac{1}{1-\alpha}} \theta W_t^{\frac{(v-1)\alpha}{1-\alpha}} r_t^{\frac{-v\alpha}{1-\alpha}} \left(\frac{1-\alpha}{\alpha} \right) - r_t \phi, \\ & \tilde{z}_t^{\frac{1-\alpha}{1-(1-\nu)\alpha}} \rho_{t,i}^{\frac{1}{1-(1-\nu)\alpha}} \bar{K}^{\frac{v\alpha}{1-(1-\nu)\alpha}} W_t^{\frac{(v-1)\alpha}{1-(1-\nu)\alpha}} [(1-\nu)\alpha]^{\frac{(1-\nu)\alpha}{1-(1-\nu)\alpha}} [1-(1-\nu)\alpha] - r_t \bar{k} - r_t \phi \end{aligned} \right\} \quad (11)$$

(3) 기업유형선택의 문제

기업가를 직업으로 선택한 가계의 구성원은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와 독립기업 중 어느 기업유형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한다. 이 문제는 식(12)와 (13)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alpha_{t,g}(z_t) = 1, z_t > \tilde{z}_t \text{ if } \rho_{t,g} \geq \rho_{t,i} \quad (12)$$

$$\left. \begin{aligned} \alpha_{t,g}(z_t) &= 0, \tilde{z}_t < z_t < \hat{z}_t \\ \alpha_{t,g}(z_t) &= 1, \hat{z}_t < z_t \end{aligned} \right\} \text{ if } \rho_{t,g} < \rho_{t,i} \quad (13)$$

여기서, $\alpha_{t,g}(z_t) \in [0, 1]$ 는 기업가를 직업으로 선택한 가계의 구성원이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를 얼마나 많이 선택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또한, \hat{z}_t 는 $z_t > \tilde{z}_t$ 에서 최종재 생산기업 계열사의 이윤과 독립기업의 이윤이 같을 때 도출되는 경영능력으로, $\pi_{t,g}(\hat{z}_t) = \pi_{t,i}(\hat{z}_t)$ 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구체화하면 식(14)와 같다.

$$\begin{aligned} & \hat{z}_t \rho_{t,g}^{\frac{1}{1-\alpha}} \theta W_t^{\frac{(v-1)\alpha}{1-\alpha}} r_t^{\frac{-v\alpha}{1-\alpha}} \left(\frac{1-\alpha}{\alpha} \right) - r_t \phi \\ &= \hat{z}_t^{\frac{1-\alpha}{1-(1-\nu)\alpha}} \rho_{t,i}^{\frac{1}{1-(1-\nu)\alpha}} \bar{K}^{\frac{v\alpha}{1-(1-\nu)\alpha}} W_t^{\frac{(v-1)\alpha}{1-(1-\nu)\alpha}} [(1-\nu)\alpha]^{\frac{(1-\nu)\alpha}{1-(1-\nu)\alpha}} [1-(1-\nu)\alpha] - r_t \bar{k} - r_t \phi \end{aligned} \quad (14)$$

먼저, $\rho_{t,g} \geq \rho_{t,j}$ 이면 기업가는 모두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를 선택한다 ($\alpha_{t,g}(z_t) = 1$). 둘째, $\rho_{t,g} < \rho_{t,j}$ 이면 $\tilde{z}_t < z_t < \hat{z}_t$ 에서는 기업가는 모두 독립기업을 선택하고($\alpha_{t,g}(z_t) = 0$), $\hat{z}_t < z_t$ 에서는 모두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를 선택한다 ($\alpha_{t,g}(z_t) = 1$).

(4) 가계의 효용극대화 문제

가계의 구성원은 직업선택과 기업유형선택을 통해 직장인,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를 운영하는 기업가, 독립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계의 효용극대화 문제는 식(16)의 예산제약 하 식(15)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비량, 노동공급량, 자본량을 결정하는 문제로 정리된다.

$$\max_{\{C_t, n_t^s, K_{t+1}\}_{t=0}^{\infty}} \sum_{t=0}^{\infty} \beta^t \left\{ \ln C_t - \frac{(n_t^s)^{1+\gamma}}{1+\gamma} \int_0^{\tilde{z}_t} g(z_t) dz_t \right\} \quad (15)$$

$$C_t + \chi_t = w_t n_t^s \int_0^{\tilde{z}_t} g(z_t) dz_t + \int_{\tilde{z}_t}^{\hat{z}_t} \sum_{k=g,j} \pi_{t,k}(z_t) \alpha_{t,k}(z_t) g(z_t) dz_t + r_t K_t \quad (16)$$

여기서, $\alpha_{t,j}(z_t) = 1 - \alpha_{t,g}(z_t)$ 이다. 또한, 최종 소비재를 기준재(numeraire)로 간주하고 그 가격을 '1'로 표준화하였다. 식(16)의 우변은 가계의 수입으로 첫 번째 항은 가계의 구성원 중 직장인이 벌어들인 임금소득이고, 두 번째 항은 가계의 구성원 중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와 독립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획득한 이윤소득이며, 세 번째 항은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와 독립기업에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벌어들인 자본소득이다. 가계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비량, 노동공급량, 자본량에 대한 1 계 조건을 구하여 정리하면, 식(17)-(18)과 같다.

$$(n_t^s)^{\gamma} = \frac{W_t}{C_t} \tag{17}$$

$$\frac{1}{C_t} = \beta \frac{1}{C_{t+1}} [r_{t+1} + 1 - \delta] \tag{18}$$

식(17)은 단위임금과 노동공급량이 비례하는 노동공급함수이다. 식(18)은 ‘t기에 소비를 1단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 그에 따른 한계효용을 포기해야하지만, t+1기에 투자수익과 시간할인이 반영된 소비의 한계효용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5) 최종재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가계 외의 또 다른 경제주체는 최종재 생산기업이다. 최종재 생산기업은 식(19)와 같은 이윤극대화 문제에 봉착한다. 최종재 생산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열사들의 중간재 총 생산량과 독립기업들의 중간재 총 생산량을 결정한다.

$$\max_{\check{y}_{t,g}, \check{y}_{t,i}} \pi_t = \left\{ \left[(1-\psi)\check{y}_{t,g}^{\xi} + \psi\check{y}_{t,i}^{\xi} \right]^{\frac{1}{\xi}} - \rho_{t,g}\check{y}_{t,g} - \rho_{t,i}\check{y}_{t,i} \right\} \tag{19}$$

최종재 생산기업의 t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열사들의 중간재 총 생산량과 독립기업들의 중간재 총 생산량에 대한 1계 조건을 구하면, 식(20)-(21)과 같다.

$$\frac{1}{\xi} \left[(1-\psi)\check{y}_{t,g}^{\xi} + \psi\check{y}_{t,i}^{\xi} \right]^{\frac{1}{\xi}-1} (1-\psi)\xi\check{y}_{t,g}^{\xi-1} = \rho_{t,g} \tag{20}$$

$$\frac{1}{\xi} \left[(1-\psi)\check{y}_{t,g}^{\xi} + \psi\check{y}_{t,i}^{\xi} \right]^{\frac{1}{\xi}-1} \psi\xi\check{y}_{t,i}^{\xi-1} = \rho_{t,i} \tag{21}$$

(6) 시장 청산 조건

모형의 균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장 청산 조건이 필요하다. 본 모형에서는 자본 시장, 노동시장,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중간재시장, 독립기업의 중간재시장, 최종재 시장이 존재한다. Walras의 법칙에 따라 자본시장, 노동시장,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중간재시장, 독립기업의 중간재시장 청산 조건이 충족되면 최종재시장 청산 조건은 자동으로 충족된다. 따라서 최종재시장 청산 조건을 제외하고 자본시장, 노동시장,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중간재시장, 독립기업의 중간재시장 청산 조건을 살펴보면, 식 (22)-(25)와 같다.

$$K_t = \int_{\bar{z}_t}^{\infty} [k_{t,g}(z_t)\alpha_{t,g}(z_t) + \bar{k}(1 - \alpha_{t,g}(z_t))]g(z_t)dz_t \quad (22)$$

$$n_t^s \int_0^{\bar{z}_t} g(z_t)dz_t = \int_{\bar{z}_t}^{\infty} [n_{t,g}(z_t)\alpha_{t,g}(z_t) + n_{t,i}(z_t)(1 - \alpha_{t,g}(z_t))]g(z_t)dz_t \quad (23)$$

$$\int_{\bar{z}_t}^{\infty} y_{t,g}(z_t)\alpha_{t,g}(z_t)g(z_t)dz_t = \ddot{y}_{t,g} \quad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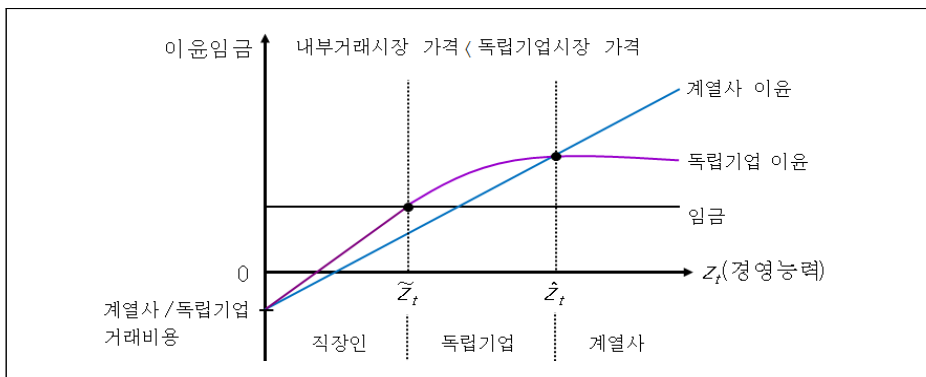
$$\int_{\bar{z}_t}^{\infty} y_{t,i}(z_t)(1 - \alpha_{t,g}(z_t))g(z_t)dz_t = \ddot{y}_{t,i} \quad (25)$$

식(22)의 좌변은 가계에서 제공하는 총 자본공급량이고, 우변은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들과 독립기업들이 중간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총 자본수요량이다. 식 (23)의 좌변은 가계의 직장인들이 제공하는 총 노동공급량이고, 우변은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들과 독립기업들이 중간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총 노동수요량이다. 식(24)의 좌변은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들이 생산한 중간재의 총 공급량이고,

우변은 최종재 생산기업이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계열사들의 중간재에 대한 총 수요량이다. 식(25)의 좌변은 독립기업들이 생산한 중간재의 총 공급량이고, 우변은 최종재 생산기업이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독립기업들의 중간재에 대한 총 수요량이다.

이상의 균형조건들을 바탕으로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모형의 균형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3-2]와 같다. 이 경우 내부거래시장 가격은 독립기업시장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다. 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로 내부거래시장 가격이 독립기업시장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기업집단 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터널링을 하기 위한 경우가 이러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해당된다.⁸⁾ 경영능력이 $z_t \leq \tilde{z}_t$ 일 때는 가계의 구성원은 직장인을 선택하고, $\tilde{z}_t < z_t < \hat{z}_t$ 의 경우에는 독립기업을 선택하며, $z_t > \hat{z}_t$ 의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를 선택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독립기업은 시장에 출현하는 반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독립기업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막혀 시장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림 3-2]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자료: 자체 분석

8) Bertrand et al.(2002)의 연구에 따르면, 터널링이란 지배주주의 소유권(또는 현금흐름권)이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으로 이익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Back et al.(2006)의 연구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내에서 터널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나.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없는 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모형의 균형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중간재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이 경우 중간재 생산기업가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식(5)와 같으나,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에 이루어지는 내부거래시장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량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윤극대화에 필요한 계열사와 독립기업의 노동수요량, 자본량, 중간재 생산량은 식(26)-(28)과 같다.

$$n_{t,b} = \rho_{t,b}^{1-\alpha} z_t \theta (1-\nu) W_t^{\frac{\nu\alpha-1}{1-\alpha}} r_t^{\frac{-\nu\alpha}{1-\alpha}} \quad (26)$$

$$k_{t,b} = \rho_{t,b}^{1-\alpha} z_t \theta \nu W_t^{\frac{-(1-\nu)\alpha}{1-\alpha}} r_t^{\frac{(1-\nu)\alpha-1}{1-\alpha}} \quad (27)$$

$$y_{t,b} = z_t \rho_{t,b}^{\frac{\alpha}{1-\alpha}} \theta^{\alpha} \nu^{\nu\alpha} (1-\nu)^{(1-\nu)\alpha} W_t^{\frac{(\nu-1)\alpha}{1-\alpha}} r_t^{\frac{-\nu\alpha}{1-\alpha}} \quad (28)$$

(2) 직업선택의 문제

독립기업의 이윤이 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달라지기 때문에 \tilde{z}_t 는 식(29)에 의해 결정된다.

$$w_t = \max \left\{ \tilde{z}_t p_{t,g}^{\frac{1}{1-\alpha}} \theta w_t^{\frac{(v-1)\alpha}{1-\alpha}} r_t^{\frac{-v\alpha}{1-\alpha}} \left(\frac{1-\alpha}{\alpha} \right) - r_t \phi, \tilde{z}_t p_{t,j}^{\frac{1}{1-\alpha}} \theta w_t^{\frac{(v-1)\alpha}{1-\alpha}} r_t^{\frac{-v\alpha}{1-\alpha}} \left(\frac{1-\alpha}{\alpha} \right) - r_t \phi \right\} \quad (29)$$

(3) 기업유형선택의 문제

기업유형선택의 문제는 식(30)-(32)와 같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alpha_{t,g}(z_t) \in [0, 1], z_t > \tilde{z}_t \text{ if } \rho_{t,g} = \rho_{t,j} \quad (30)$$

$$\alpha_{t,g}(z_t) = 1, z_t > \tilde{z}_t \text{ if } \rho_{t,g} > \rho_{t,j} \quad (31)$$

$$\alpha_{t,g}(z_t) = 0, z_t > \tilde{z}_t \text{ if } \rho_{t,g} < \rho_{t,j} \quad (32)$$

먼저, $\rho_{t,g} = \rho_{t,j}$ 이면 기업가는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독립기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alpha_{t,g}(z_t) \in [0, 1]$). 둘째, $\rho_{t,g} > \rho_{t,j}$ 이면 기업가는 모두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를 선택한다($\alpha_{t,g}(z_t) = 1$). 셋째, $\rho_{t,g} < \rho_{t,j}$ 이면 기업가는 모두 독립기업을 선택한다($\alpha_{t,g}(z_t) = 0$).

(4) 가계의 효용극대화 및 최종재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하다.

(5) 시장 청산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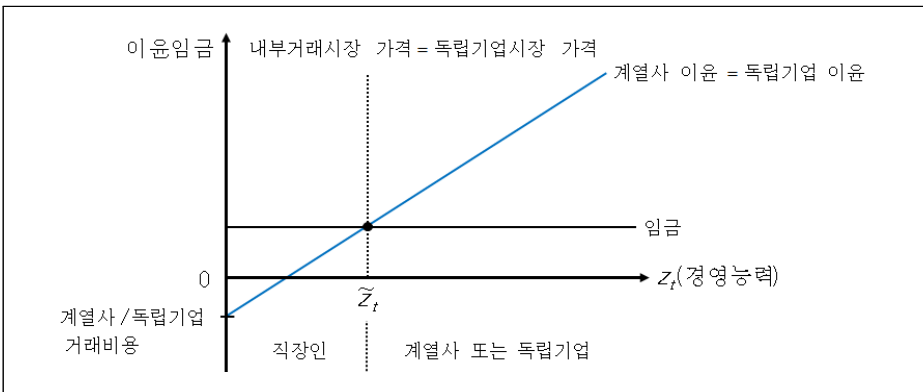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에 이루어지는 내부거래시장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량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시장 청

산 조건만 식(33)과 같이 달라지고, 나머지 시장 청산 조건은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 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하다.

$$K_t = \int_{\tilde{z}_t}^{\infty} [k_{t,g}(z_t)\alpha_{t,g}(z_t) + k_{t,i}(z_t)(1 - \alpha_{t,g}(z_t))]g(z_t)dz_t \quad (33)$$

이상의 균형조건들을 바탕으로 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모형의 균형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3-3]과 같다. 이 경우 내부거래시장 가격은 독립기업시장 가격과 같아진다. 경영능력이 $z_t \leq \tilde{z}_t$ 일 때는 가계의 구성원은 직장인을 선택하고, $z_t > \tilde{z}_t$ 의 경우에는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 또는 독립기업을 선택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와 독립기업이 모두 다 시장에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처럼 생산성이 높은 독립기업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막혀 시장에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9)

[그림 3-3]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



* 자료: 자체 분석

9) 바로 이점 때문에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다. 미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는 미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모형의 균형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중간재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이 경우는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r_t\sigma$ 만큼 더 크다. 따라서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독립기업을 운영하는 중간재 생산기업가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식(34)와 같이 바뀐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최적의 노동수요량, 자본량, 중간재 생산량을 도출하는 조건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간재기업의 균형조건들은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하다.

$$\max_{n_{t,j}, k_{t,j}} \pi_{t,j} = \left\{ p_{t,j} z_t^{1-\alpha} (k_{t,j}^\nu n_{t,j}^{1-\nu})^\alpha - w_t n_{t,j} - r_t (k_{t,j} + \phi + \sigma) \right\} \quad (34)$$

(2) 직업선택의 문제

독립기업의 이윤이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달라지기 때문에 \bar{z}_t 는 식(35)에 의해 결정된다.

$$w_t = \max \left\{ \begin{aligned} & \bar{z}_t p_{t,g}^{1-\alpha} \theta w_t^{1-\alpha} r_t^{1-\alpha} \left(\frac{1-\alpha}{\alpha} \right) - r_t \phi, \\ & \bar{z}_t^{1-(1-\nu)\alpha} p_{t,j}^{1-(1-\nu)\alpha} \bar{k}^{1-(1-\nu)\alpha} w_t^{1-(1-\nu)\alpha} [(1-\nu)\alpha]^{1-(1-\nu)\alpha} [1-(1-\nu)\alpha] - r_t \bar{k} - r_t (\phi + \sigma) \end{aligned} \right\} \quad (35)$$

(3) 기업유형선택의 문제

독립기업의 이윤이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달라지기 때문에 \hat{z}_t 는 식(36)에 의해 결정된다. 나머지는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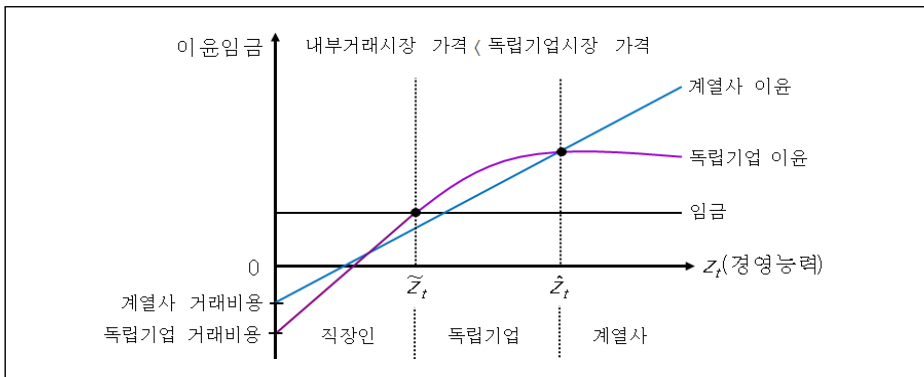
$$\begin{aligned} & \hat{z}_t \rho_{t,g}^{1-\alpha} \theta W_t^{1-\alpha} r_t^{-\alpha} \left(\frac{1-\alpha}{\alpha} \right) - r_t \phi \\ & = \hat{z}_t^{\frac{1-\alpha}{1-(1-\nu)\alpha}} \rho_{t,j}^{\frac{1}{1-(1-\nu)\alpha}} k^{\frac{\nu\alpha}{1-(1-\nu)\alpha}} W_t^{\frac{(1-\nu)\alpha}{1-(1-\nu)\alpha}} \left[(1-\nu)\alpha \right]^{\frac{(1-\nu)\alpha}{1-(1-\nu)\alpha}} \left[1 - (1-\nu)\alpha \right] - r_t \bar{k} - r_t (\phi + \sigma) \end{aligned} \tag{36}$$

(4) 가계의 효용극대화 및 최종재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시장 청산 조건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하다.

이상의 균형조건들을 바탕으로 미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모형의 균형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3-4]와 같다. 이 경우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거래비용이 독립기업의 것보다 작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숙된 시장에서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하다.

[그림 3-4] 미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자료: 자체 분석

라. 미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는 미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모형의 균형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중간재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이 경우는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tau\sigma$ 만큼 더 크다. 따라서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할 경우에 비해 독립기업을 운영하는 중간재 생산기업가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식(37)과 같이 바뀐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최적의 노동수요량, 자본량, 중간재 생산량을 도출하는 조건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간재기업의 균형조건들은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할 경우와 동일하다.

$$\max_{n_{t,j}, k_{t,j}} \pi_{t,j} = \left\{ p_{t,j} z_t^{1-\alpha} \left(k_{t,j}^\nu n_{t,j}^{1-\nu} \right)^\alpha - w_t n_{t,j} - r_t (k_{t,j} + \phi + \sigma) \right\} \quad (37)$$

(2) 직업선택의 문제

독립기업의 이윤이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할 경우와 달라지기 때문에 \tilde{z}_t 는 식(38)에 의해 결정된다.

$$w_t = \max \left\{ \tilde{z}_t p_{t,j}^{\frac{1}{\alpha}} \theta w_t^{\frac{(v-1)\alpha}{1-\alpha}} r_t^{\frac{-v\alpha}{1-\alpha}} \left(\frac{1-\alpha}{\alpha} \right) - r_t \phi, \tilde{z}_t p_{t,j}^{\frac{1}{\alpha}} \theta w_t^{\frac{(v-1)\alpha}{1-\alpha}} r_t^{\frac{-v\alpha}{1-\alpha}} \left(\frac{1-\alpha}{\alpha} \right) - r_t (\phi + \sigma) \right\} \quad (38)$$

(3) 기업유형선택의 문제

기업유형선택의 문제는 식(39)-(41)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alpha_{t,g}(z_t) = 1, z_t > \tilde{z}_t \text{ if } \rho_{t,g} \geq \rho_{t,i} \quad (39)$$

$$\alpha_{t,g}(z_t) = 0, z_t > \tilde{z}_t \text{ if } \rho_{t,g} < \rho_{t,i} \text{ and } z_t^* < \tilde{z}_t \quad (40)$$

$$\left. \begin{array}{l} \alpha_{t,g}(z_t) = 1, \tilde{z}_t < z_t < z_t^* \\ \alpha_{t,g}(z_t) = 0, z_t^* < z_t \end{array} \right\} \text{if } \rho_{t,g} < \rho_{t,i} \text{ and } \tilde{z}_t < z_t^* \quad (41)$$

여기서, z_t^* 는 최종재 생산기업 계열사의 이윤과 독립기업의 이윤이 같을 때 도출되는 경영능력으로, $\pi_{t,g}(z_t^*) = \pi_{t,i}(z_t^*)$ 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구체화하면 식(42)와 같다.

$$z_t^* \rho_{t,g}^{1-\alpha} \theta W_t^{1-\alpha} r_t^{-\alpha} \left(\frac{1-\alpha}{\alpha} \right) - r_t \phi = z_t^* \rho_{t,i}^{1-\alpha} \theta W_t^{1-\alpha} r_t^{-\alpha} \left(\frac{1-\alpha}{\alpha} \right) - r_t (\phi + \sigma) \quad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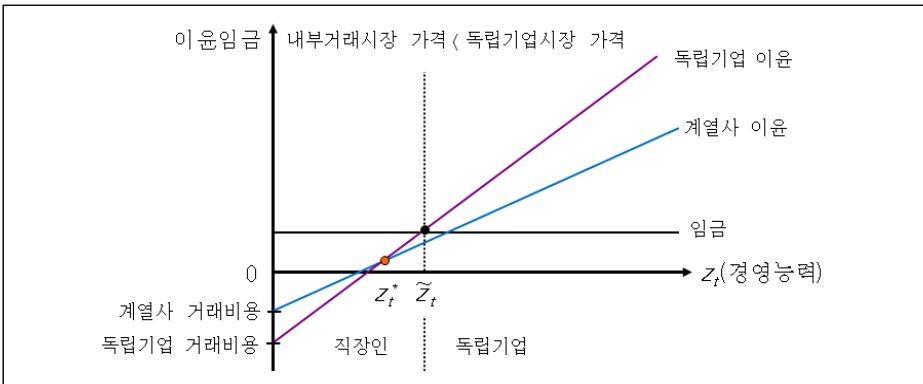
먼저, $\rho_{t,g} \geq \rho_{t,i}$ 이면 기업가는 모두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를 선택한다 ($\alpha_{t,g}(z_t) = 1$). 둘째, $\rho_{t,g} < \rho_{t,i}$ 이고 $z_t^* < \tilde{z}_t$ 이면 기업가는 모두 독립기업을 선택한다 ($\alpha_{t,g}(z_t) = 0$). 셋째, $\rho_{t,g} < \rho_{t,i}$ 이고 $\tilde{z}_t < z_t^*$ 이면 $\tilde{z}_t < z_t < z_t^*$ 에서는 기업가는 모두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를 선택하고($\alpha_{t,g}(z_t) = 1$), $z_t^* < z_t$ 에서는 모두 독립기업을 선택한다($\alpha_{t,g}(z_t) = 0$).

(4) 가계의 효용극대화 및 최종재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시장 청산 조건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할 경우와 동일하다.

이상의 균형조건들을 바탕으로 미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모형의 균형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3-5]와 같다. 이 경우 解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부거래시장 가격은 독립기업시장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고,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 이윤과 독립기업의 이윤이 같아지는 지점 z_t^* 가 \tilde{z}_t 보다 더 커야한다. 이러한 경우는 독립기업의 거래비용이 계열사의 것보다 훨씬 커야한다.

[그림 3-5] 미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



* 자료: 자체 분석

마. 모형의 解

모형의 解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첫째,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장기균형 解와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의 장기균형 解를 비교하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제약조건, 1계 조건, 시장청산 조건에 대한 장기균형조건을 도출하여 내생변수 $C, \chi, K, n^s, n_g, n_i, K_g, k_i, y_g, y_i, \ddot{y}_g, \ddot{y}_i, w, r, \rho_g, \rho_i, \tilde{z}, \hat{z}, z^*$ 에 대한 解를 구한다. 둘째,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 시장이 미성숙된 상태에서 성숙해질 때 모형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동태균형 解를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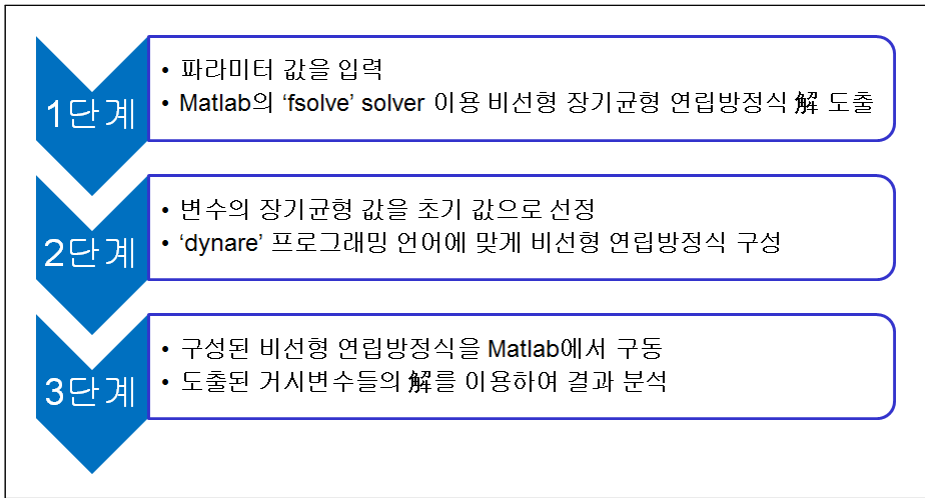
IV. 정량분석

1. 분석절차 및 파라미터 값

가. 분석절차

본 장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보정(Calibration)을 실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한 절차는 정태분석절차와 동태분석절차로 나누어진다. 첫째, 정태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의 균형조건들에 파라미터 값을 입력한다. 그 다음 모형의 장기 균형조건들을 도출한 후 Matlab의 'fsolve' solver를 이용하여 解를 구한다. 'fsolve' solver를 사용하는 이유는 도출된 장기균형 연립방정식이 비선형이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解를 구할 수 없고 수치적으로 도출해야하기 때문이다.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장기균형 解와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의 장기균형 解를 비교하여 각 변수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둘째, 동태분석절차는 [그림 4-1]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에서는 정태분석절차와 동일하게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고 모형의 장기 균형조건들을 도출한 후 Matlab의 'fsolve' solver를 이용하여 解를 구한다. 2단계에서는 우선 1단계에서 도출한 장기균형 解를 각 변수들의 초기 값으로 선정한다. 그 다음 'dynare' 프로그래밍 언어에 맞게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구성하여 Matlab에 입력한다. 3단계에서는 구성된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Matlab에서 구동시켜 거시변수들의 解를 도출한다.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시장이 미성숙된 상태에서 성숙해질 때 모형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림 4-1] 동태분석절차



* 자료: 자체 분석

나. 파라미터 값

정량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값은 <표 4-1>과 같이 설정하였다. 기업가의 통제범위 α 는 자본비중 $\alpha\nu$ 와 노동비중 $\alpha(1-\nu)$ 의 합으로, 경영능력의 비중을 제외한 값이다. 경영능력(또는 총요소생산성)의 비중은 한국산업생산성(Korea Industrial Productivity)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표학길 등 3명(2015)의 연구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06년과 2009년 사이 부가가치 증가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15.22%이다. 따라서 기업가의 통제범위 α 는 $0.8478(1-0.1522)$ 을 적용하였다. 자본소득분배율 ν 는 한국은행 자료로부터 도출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의 2014년도 자료에 따르면, 자본소득분배율은 $0.368(\text{영업잉여} \div [\text{비용자보수} + \text{영업잉여}])$ 이다.¹⁰⁾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와 독립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래비용 파라미터 ϕ 와 독립기업에 만 적용되는 거래비용 파라미터 σ 는 자료가 가용하지 않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의 값

10) 대기업집단과 독립기업의 매출액에 대한 가장 최근 자료는 통계청의 2014년도 자료이므로, 정량분석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값의 기준연도는 2014년이다.

을 각각 0.00368(2014년 실질이자율÷10), 0.01104($\phi \times 3$)로 설정한 뒤, 민감도 분석을 통해 주요 결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 감가상각률 δ 는 김명규·김성태(2010)의 연구에서 활용된 0.04 값을 적용하였다. 노동공급 파라미터 γ 와 최종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탄력성 파라미터 ξ 는 우리나라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존연구에서 활용된 값을 적용하였다. 즉, 전자는 Chari et al.(2000)의 연구에서 활용된 1.25 값을 적용하였고, 후자는 Garcia-Santana and Pijoan-Mas (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2/3' 값을 활용하였다. 이 두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추후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결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시간에 대한 할인계수 β 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로부터 획득된 2014년 실질이자율을 활용하여 $0.96(1 \div [1 + \text{실질이자율}])$ 으로 설정하였다. 독립기업의 중간재 생산비중 ψ 에 대한 값은 통계청(2015)으로부터 획득된 2014년 대기업집단 매출액과 독립기업 매출액을 이용하여 $0.6(\text{독립기업 매출액} \div [\text{대기업집단 매출액} + \text{독립기업 매출액}])$ 으로 설정하였다.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독립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자본량 \bar{k} 에 대한 값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획득하였다. 자본 제약이 있는 독립기업의 최대 매출액($\rho_i \bar{y}_i$)은 자본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우($\rho_i y_i$)의 93% 수준이다. 즉, $\rho_i \bar{y}_i = \rho_i z^{(1-\alpha)} (\bar{k}^\nu n_i^{1-\nu})^\alpha = 0.93 \rho_i y_i$ 이다. 여기서 93% 수치는 공정거래위원회(2016)의 2014년 민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약 181.1조원)과 통계청(2015)의 2014년 독립기업 매출액(2,517조원)을 활용하여 도출된 것이다. 독립기업이 접근할 수 없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시장 규모는 전체 독립기업 매출액의 약 7%(181.1조원÷2,517조원)에 해당된다. 이는 개별 독립기업이 평균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매출액 비중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별 독립기업의 최대 매출액은 내부거래시장을 개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의 93% 수준이다. 그러므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독립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자본량 $\bar{k} = [0.93 y_i / z^{(1-\alpha)} n_i^{(1-\nu)\alpha}]^{\frac{1}{\nu\alpha}} = 0.1$ 이다. 여기서 독립기업의 생산량과 노동수요량에 대한 값은 자본 제약이 없는 경우 도출된 것이다.

〈표 4-1〉 파라미터 값

구 분	파라미터 값	출 처
α (기업가의 통제범위)	0.8478	표학길 등 3명(2015)
ν (자본소득배분율)	0.368	한국은행(2014)
ϕ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와 독립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래비용 파라미터)	0.00368	.
σ (독립기업에만 적용되는 거래비용 파라미터)	0.01104	.
δ (감가상각률)	0.04	김명규·김성태(2010)
γ (노동공급 파라미터)	1.25	Chari et al.(2000)
ξ (최종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탄력성 파라미터)	2/3	Garcia-Santana and Pijoan-Mas(2014)
β (시간에 대한 할인계수)	0.9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ψ (독립기업의 중간재 생산비중)	0.6	통계청(2015)
\bar{k}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독립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자본량)	0.1	공정거래위원회(2016)

정량분석을 위해서는 경영능력에 대한 확률밀도함수 $g(z_t)$ 의 구체적인 형태를 결정해야한다. 기업가의 경영능력은 Guner et al.(2008)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업규모를 결정짓는다. 따라서 경영능력에 대한 확률밀도함수 $g(z_t)$ 는 기업규모의 분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기업규모의 분포를 분석한 최희갑(2006)의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은 파레토 분포를 따르고 그 외 규모기업은 로그정규분포 형태를 취한다. 본 연구는 대규모기업의 내부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식(43)과 같이 파레토 분포를 우리나라 기업규모의 분포로 선정한다.

$$g(z_t) = \rho \eta^\rho z_t^{-(1+\rho)}, \quad z_t \geq \eta > 0, \quad \rho > 0 \quad (43)$$

여기서, ρ 는 파레토 분포의 형태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고, η 는 경영능력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ρ 는 최희갑(2006)의 연구에서 도출된 1.004 값을 적용하였다. η 는 경영능력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모형의 균형에서 최대한 0 값에 가까운 0.005 값을 설정하였다.

2. 분석결과

가. 정태분석결과

첫 번째 분석결과는 정태분석결과로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장기균형 解와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의 장기균형 解를 비교하여 각 변수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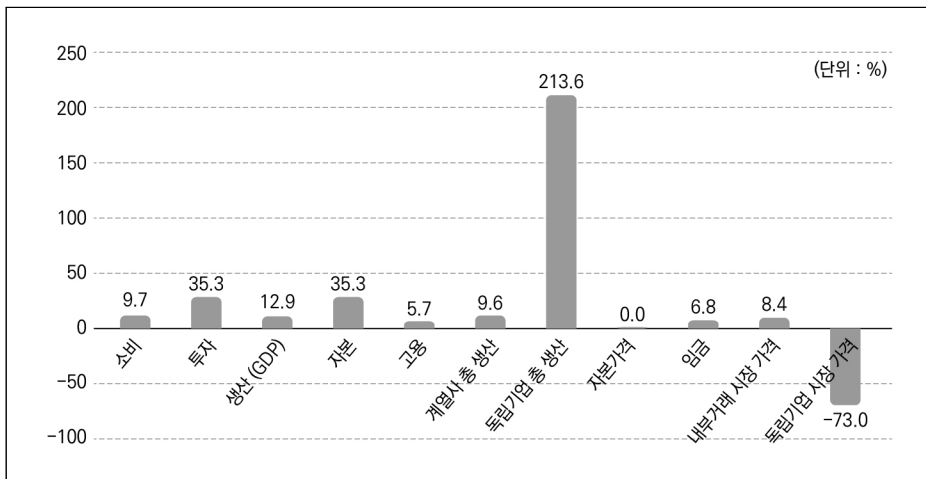
(1) 성숙된 시장

[그림 4-2]는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없는 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즉,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장기균형 解와 내부거래를 개방할 경우의 장기균형 解를 비교하여 각 변수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4-2]에 따르면, 소비, 투자, 생산(GDP), 자본, 고용이 각각 9.7%, 35.3%, 12.9%, 35.3%, 5.7% 상승한다. 소비에 비해 투자가 크게 상승하는 이유는 투자재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독립기업이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시장으로 진입이 가능할 경우 [그림 4-2]와 같이 계열사의 총 생산과 독립기업의 총 생산이 각각 9.6%, 213.6% 상승한다. 이러한 계열사 및 독립기업 생산물은 중간재로서 최종재 생산의 증가를 가져온다. 최종재는 소비재와 투자재로 나누어져 사용되고, 투자재는 다시 자본재 축적을 유발하고, 자본재는 중간재 생산에 사용된다. 이렇게 투자재는 파급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소비에 비해 투자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4-2]에 따르면, 자본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임금은 6.8% 상승하게 되어 고용의 질도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모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시장

에 독립기업이 진입할 수 없을 경우 내부거래시장 가격은 독립기업시장 가격보다 낮다. 이는 대기업집단이 내부거래를 통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시장을 개방하여 독립기업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두 시장 가격은 같아지기 때문에 [그림 4-2]와 같이 내부거래시장 가격은 8.4% 증가하고, 독립기업시장 가격은 73.0% 감소한다.

[그림 4-2]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개방 효과(변화율)



* 자료: 자체 분석

상기 효과를 실물단위로 나타내는데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거시 지표를 먼저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427.0조원이고, 실질 총고정자본형성은 약 413.5조원이며, 고용자수는 26,356,229명이다.

<표 4-2> 주요 거시 지표 현황(2014년)

구분	실질 GDP	실질 총고정자본형성	고용자수
내용	1,427.0조원	413.5조원	26,356,229명

*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주요 거시 지표를 활용하여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부거래의 개방 주요 효과를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생산(GDP)과 자본이 각각 184.5조원, 146.0조원 늘어나고, 고용은 1,514,127명이 증가한다.¹¹⁾

<표 4-3>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개방 주요 효과(실물단위)

구분	비율	거시 변수	실물단위
생산(GDP) 증가량	12.9%	1,427.0조원 (실질 GDP)	184.5조원
자본 증가량	35.3%	413.5조원 (실질 총고정자본형성)	146.0조원
고용 증가량	5.7%	26,356,229명 (고용자수)	1,514,127명

* 자료: 자체 분석

(2) 미성숙된 시장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가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독립기업이 최종재 생산기업과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는 미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장기균형 解는 성숙된 시장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된다. 그러나 미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의 장기균형 解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解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림 3-5]와 같이 내부거래시장 가격이 독립기업시장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상태에서 최종재 생산기업의 계열사 이윤과 독립기업이 이윤이 같아지는 지점 z^* 가 \bar{z} 보다 더 커야하는데, 이러한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확인할 수 없다.

11) 기업가의 통제범위 α 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제한되어 Guner et al.(2008)의 연구에서 활용된 0.802 값을 적용하여 분석한 라정주·한원석(2017)의 연구에서는 생산(GDP)과 자본이 각각 132.7조원, 143.1조원 늘어나고, 고용은 2,213,009명이 증가한다.

나. 동태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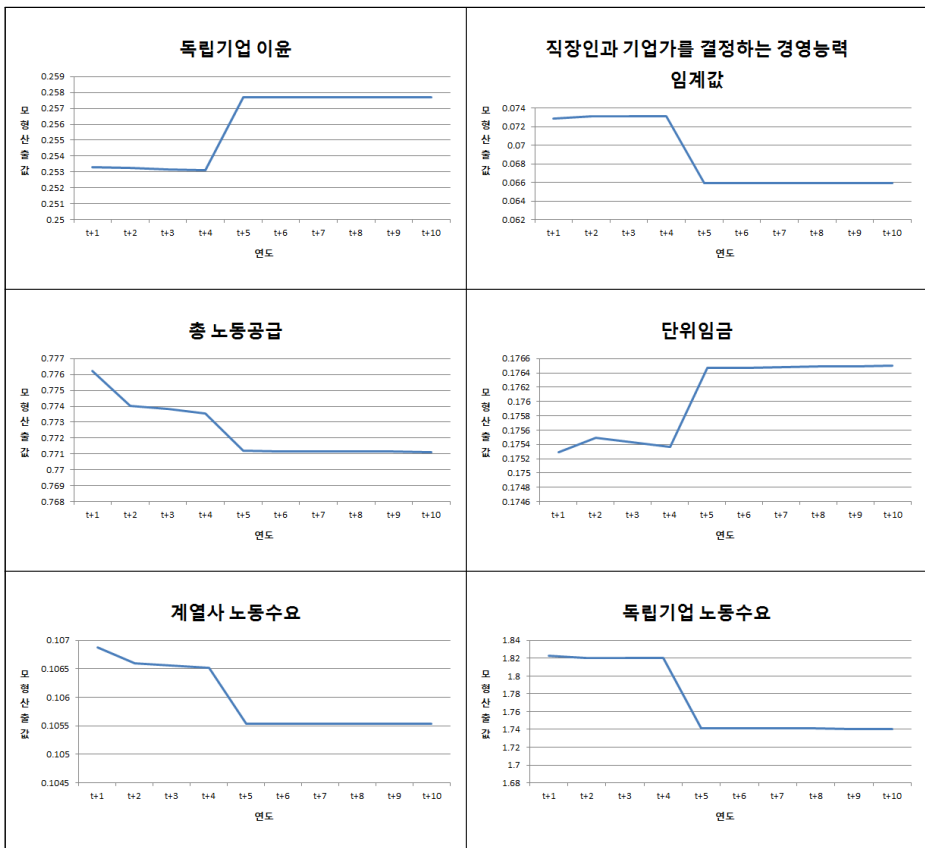
두 번째 분석결과는 동태분석결과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 시장이 미성숙된 상태에서 성숙해질 때 모형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미성숙된 시장에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거래비용이 $r_t\phi$ 인 반면, 독립기업의 거래비용은 $r_t(\phi + \sigma)$ 이다. 독립기업의 거래비용을 $r_t\phi$ 로 축소할 경우(시장이 성숙해질 경우) 모형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 [그림 4-3]과 같다. 정태분석에서는 $\sigma = 3\phi$ 로 설정하였지만, [그림 4-3]의 동태분석에서는 모형의 균형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sigma = 50\phi$ 로 설정하였다. t+4기에 독립기업의 거래비용을 $r_t(\phi + \sigma)$ 에서 $r_t\phi$ 로 축소하면 모형의 균형이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독립기업의 거래비용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독립기업의 이윤이 증가한다.¹²⁾ [그림 3-4]에서 독립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면 직장인과 기업가를 결정하는 경영능력 임계값 \bar{z}_t 가 작아진다. \bar{z}_t 가 작아지면 총 노동공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단위임금이 상승한다. 단위임금이 상승하면 계열사와 독립기업의 노동수요가 줄어든다. 한편, 독립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고 단위임금이 상승하면, 식(16)의 예산제약에 의해 소비가 증가한다.¹³⁾ 소비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총 생산이 늘어나는데, 이는 계열사의 총 생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독립기업의 총 생산에 의해 유발된다. 여기서 독립기업은 직장인과 기업가를 결정하는 경영능력 임계값 \bar{z}_t 와 독립기업과 계열사를 결정하는 경영능력 임계값 \hat{z}_t 가 작아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규모가 작고 노동수요가 적은 기업이다. 결국 소비촉진에 의한 총 생산증가는 단위임금 상승으로 인해 줄어든 노동수요를 상쇄할 만한 노동수요 증가를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 노동수요는 줄어든다. 즉, 총 생산은 늘어나는데 총 노동수요는 줄어들게 되는 ‘고용 없는 성장’이 촉발된다. 이는 시장이 성숙하여 대

12) 독립기업의 이윤은 늘어나는 반면,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이윤은 줄어든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성숙된 시장에서 성숙된 시장으로 전환 시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총자산영업이익율은 독립기업의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Buysschaert et al.(2008)의 연구와 일치된다.

13) 독립기업의 이윤과 단위임금 상승에 의한 소득증가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데, 분석결과 투자는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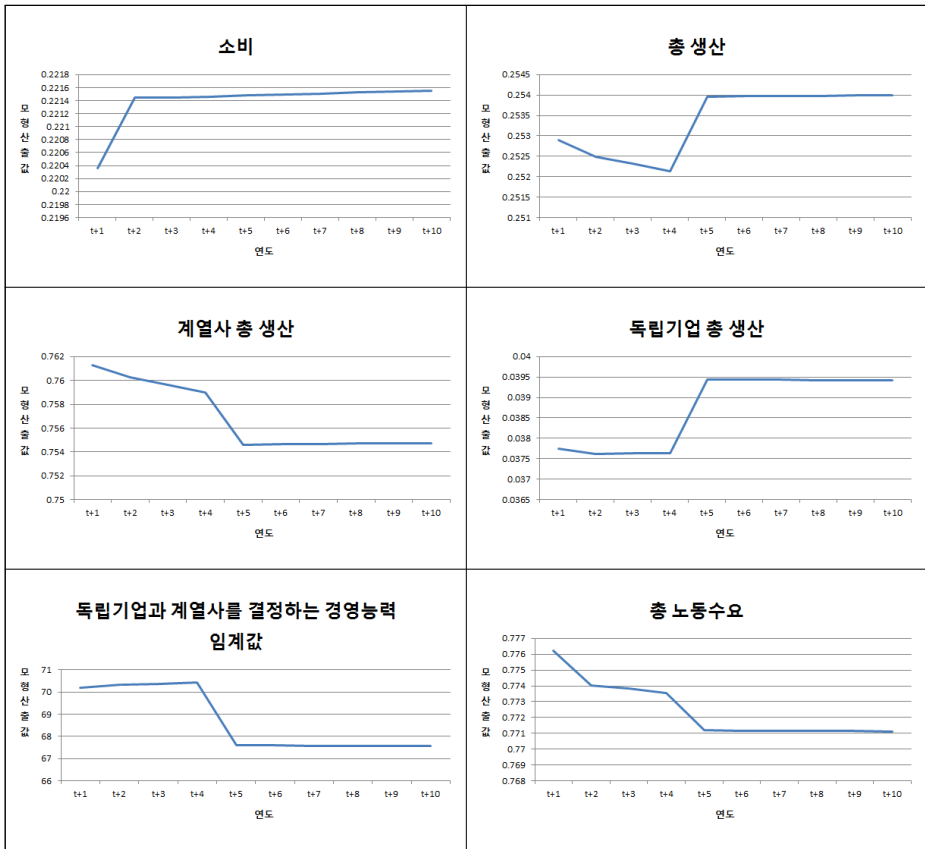
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의 거래비용이 같아지는 경우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는 고용 없는 성장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수(2011)와 김배근(2012)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발생되었다. 우리나라의 시장이 크게 성숙된 계기가 바로 외환위기인 점을 고려해볼 때 본 모형의 설명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3] 거래비용 축소에 따른 모형의 균형 변화($\sigma = 50\phi$ 일 경우)



(계속)

[그림 4-3] 계속



* 자료: 자체 분석

[그림 4-3]에서는 σ 의 값을 50ϕ 로 설정하였는데, 다른 값을 입력하여도 동일한 패턴이 분석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σ 의 값을 100ϕ 와 150ϕ 로 변경하여 분석하면, <표 4-4>와 같다. σ 의 값을 증가시켜 거래비용 축소 수준을 크게 하면, 각 변수들의 변화율도 비례적으로 늘어나지만 부호는 변하지 않는다. 즉,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의 초기 거래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나에 관계없이 시장이 성숙하여 이들의 거래비용이 같아지는 경우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는 고용 없는 성장을 유발한다.

〈표 4-4〉 거래비용 축소 수준에 따른 모형의 균형 변화

구분	거래비용 축소: $r_t(\phi + \sigma) \rightarrow r_t\phi$		
	$\sigma = 50\phi$	$\sigma = 100\phi$	$\sigma = 150\phi$
독립기업 이윤	1.8	3.7	5.8
\tilde{z}_t	-9.5	-17.7	-24.8
총 노동공급	-0.7	-1.2	-1.7
단위임금	0.7	1.4	1.9
계열사 노동수요	-1.3	-2.4	-3.3
독립기업 노동수요	-4.5	-8.5	-12.1
소비	0.6	1.1	1.6
총 생산	0.4	0.9	1.2
계열사 총 생산	-0.8	-1.6	-2.2
독립기업 총 생산	4.4	8.8	13.2
\hat{z}_t	-3.7	-7.2	-10.4
총 노동수요	-0.7	-1.2	-1.7

* 자료: 자체 분석

다. 민감도 분석

우리나라에 대한 자료가 제한되어 임의의 값을 사용한 경우와 기존문헌의 것을 사용한 경우 파라미터 값 변경에 따라 도출된 분석결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태분석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면, 〈표 4-5〉와 같다.¹⁴⁾ 노동공급 파라미터 γ 의 값을 1.25에서 0.7로 감소시키거나 3으로 증가시켰을 때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개방 효과는 기준 분석결과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최종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탄력성 파라미터 ξ 의 값을 $2/3$ ($\varepsilon = 3$)에서 $4/5$ ($\varepsilon = 5$) 또는 $6/7$ ($\varepsilon = 7$)로 증가시키면 기준 분석결과에 비해 각 변

14) 독립기업에만 적용되는 거래비용 파라미터 σ 의 값도 민감도 분석을 위해 50ϕ , 100ϕ , 150ϕ 로 변경하여 분석하면, 기준 분석결과와 같이 미성숙된 시장에서 최종재 생산기업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균형 解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들의 변화율이 대부분 축소되어 나타나지만, 계열사 총 생산을 제외하고는 부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계열사 총 생산의 경우 부호가 '+'에서 '-'로 바뀌는데, 이는 계열사 총 생산이 최종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탄력성 파라미터 ξ 의 함수로 상호 음(-)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즉,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개방하면 우수한 독립기업이 시장에 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최종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탄력성이 커지면 계열사의 중간재는 독립기업의 중간재에 의해 더 많이 대체된다. 다음으로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와 독립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래비용 파라미터 ϕ 의 값을 0.00368에서 0.000368로 감소시키거나 0.0368로 증가시키면,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개방 효과는 기존 분석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표 4-5〉 정태분석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구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개방 효과(변화율, %)						
	기준	$\gamma = 0.7$	$\gamma = 3$	$\xi = 4/5$	$\xi = 6/7$	$\phi = 0.000368$	$\phi = 0.0368$
소비	9.7	9.0	10.7	8.2	5.8	9.6	9.8
투자	35.3	34.4	36.8	14.7	8.2	35.3	35.2
생산(GDP)	12.9	12.2	14.1	9.1	6.1	12.9	13.0
자본	35.3	34.4	36.8	14.7	8.2	35.3	35.2
고용	5.7	4.8	7.3	1.7	0.6	5.8	5.6
계열사 총 생산	9.6	8.8	10.9	-5.6	-9.5	9.6	9.4
독립기업 총 생산	213.6	213.8	214.0	811.5	1,988	213.4	216.1
자본가격	0.0	0.0	0.0	0.0	0.0	0.0	0.0
임금	6.8	7.1	6.3	7.3	5.4	6.8	6.9
내부거래시장 가격	8.4	8.5	8.4	6.0	4.0	8.4	8.5
독립기업시장 가격	-73.0	-73.0	-72.9	-69.3	-66.2	-73.0	-73.1

* 자료: 자체 분석

둘째, 동태분석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면, 〈표 4-6〉과 같다. 정태분석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처럼 파라미터 값을 변경시키면, 각 변수들의 변화율도 기준 분

석결과에 비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만 부호는 변하지 않는다. 즉, 시장이 성숙하여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의 거래비용이 같아지면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고용 없는 성장을 유발한다는 결과는 파라미터 값의 변화에도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

〈표 4-6〉 동태분석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구분	거래비용 축소에 따른 모형의 균형 변화						
	기준	$\gamma = 0.7$	$\gamma = 3$	$\xi = 4/5$	$\xi = 6/7$	$\phi = 0.000368$	$\phi = 0.0368$
독립기업 이윤	1.8	1.9	1.6	4.4	7.0	1.7	1.8
\hat{z}_t	-9.5	-9.5	-9.6	-10.5	-10.8	-9.5	-9.4
총 노동공급	-0.7	-0.6	-0.8	-0.2	-0.1	-0.7	-0.6
단위임금	0.7	0.7	0.7	0.2	0.1	0.7	0.7
계열사 노동수요	-1.3	-1.2	-1.4	-0.5	-0.2	-1.3	-1.2
독립기업 노동수요	-4.5	-4.4	-4.6	-3.0	-2.4	-4.5	-4.4
소비	0.6	0.6	0.5	0.1	0.1	0.6	0.6
총 생산	0.4	0.5	0.4	0.1	0.02	0.4	0.4
계열사 총 생산	-0.8	-0.8	-0.9	-0.3	-0.2	-0.8	-0.8
독립기업 총 생산	4.4	4.4	4.4	6.3	7.5	4.4	4.4
\hat{z}_t	-3.7	-3.7	-3.7	-1.9	-0.4	-3.7	-3.7
총 노동수요	-0.7	-0.6	-0.8	-0.2	-0.1	-0.7	-0.6

* 자료: 자체 분석

V. 정책적 대안¹⁵⁾

1. 내부거래 규제 방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장이 미성숙하여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될 경우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시장이 성숙된 경우에는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의계약을 통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독립 중소기업들이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개념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재정립해볼 수 있다.¹⁶⁾

가. 공개입찰의 원칙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부담해야 될 거래비용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련 정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거래비용이 현저히 큰 경우를 세부업종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할 수 있지만, 개별기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의계약여부는 개별기업의 판단에 맡기고 수의계약 사유서를 통해 관련 정부부서가 타당성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15) 본 내용의 일부분은 라정주·한원석(2017)의 연구로부터 발췌한 것이다.

16) 본 연구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나. 입찰평가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긍정적인 거시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를 위한 전제는 입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만약 공공입찰경쟁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발주처에서 입찰 제안서 평가관에게 인건비를 제공할 경우 입찰평가의 공정성은 크게 저해될 것이다. 특히,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공개입찰에 참여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을 포함하여 능력이 있는 기업이 공개입찰에서 낙찰될 수 있도록 하려면 독립된 평가기관이 필요하다. 하나의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립된 평가기관을 설립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한다면 공정한 입찰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 입찰정보 공개

독립기업이 대기업집단과 거래할 때 드는 비용과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하는 비용이 차이가 없는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입찰에 관련된 정보를 참가자에게 모두 똑같이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에게만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독립기업에게는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제공할 경우 내부거래를 개방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라. 적용범위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계열 분리된 기업 간에 수의계약을 통한 거래도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의 범위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상기와 같이 통제할 경우 일부 기업을 계열사로부터

분리시켜 거래를 지속할 가능성이 앞에서 살펴본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사례와 같이 높기 때문이다.

2. 부당내부거래 규제 방안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 방안은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방안은 대기업집단의 강력한 저항과 정부 당국의 실천 의지와 맞물려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가. 총수일가의 초과지분율(피지원기업-지원기업)에 대한 배당 금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총수일가는 보유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활용한다. 즉,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계열사(지원기업)에서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피지원기업)로 이익이 전환될 수 있도록 부당내부거래를 한다. 따라서 총수일가가 지원기업 대비 피지원기업에 대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대해서 배당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총수일가는 보유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후 배당을 통해 사익편취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다.

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조직 강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일은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감시국 예하 시장감시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 지식산업감시과를 통해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수를 고려할 때 그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나 대상기업의 범위가 대기업집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을 포함한다. 따라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조직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대기업집단은 부당내부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국 예하에 있는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부당내부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대기업집단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권 강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식별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의조사권을 강제조사권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실시할 수 있는 강제 조사가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임의조사이다.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정거래당국이 강제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방안은 부당내부거래를 포함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일하게 광역자치단체에게도 부여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인력을 고려해볼 때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기에는 그 역량이 과중하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의 접근성도 같이 고려해볼 때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이 방안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

라.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윤경(2016)의 연구에 따르면, 공

정거래위원회는 1981년 설립 시부터 2012년 말까지 총 65,481건을 심결하여 10,049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1,980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573건(전체의 0.9%)에 대해서만 검찰에 형사고발하였다. 이렇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형사고발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제71호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죄는 중요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중요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전속고발권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는 일반 형사범죄와는 달리 법 위반여부가 행위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의 효과에 따라 달라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곧바로 이를 형사사건화하기 곤란하고, 공정거래법상 위법하다고 규정된 행위들은 절도 및 사기와 같은 반윤리적인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여부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 위반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행정조치로 충분한지 또는 형사제재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전문성 및 기술성을 보유하고 있는 담당 행정기관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이건목·이정념, 2010).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사고발에 대해 소극적이고, 특히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 대해 행정 제재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행위자와 의사결정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은 소홀히 해왔다(전윤경, 2016).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속고발권 제도에 추가되었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66조와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71조 3항).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제71조 4항). 그러나 이러

한 제도보완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윤경(2016)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검찰총장 명의의 고발요청권은 2건에 불과하였고, 2013년 의무고발제도가 도입된 이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의 고발요청 건수는 각각 0건, 3건, 9건 밖에 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까지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해온 목소리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검찰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법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필수적이다. 둘째, 전속고발권의 폐지로 형사고발이 난무하게 될 경우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위의 첫 번째 문제는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전담할 검찰 내 전문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제외하고 일반 형사부에서 다른 형사사건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수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¹⁷⁾ 두 번째 문제는 단기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단기적으로는 형사고발이 난무하여 기업활동이 방해받을 수 있다. 이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그 동안 고발되지 못한 경쟁제한 및 불공정행위들이 누적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문제이다. 또한 형사고발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경제구조가 경쟁제한 및 불공정행위로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고발권 제도로 인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은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경제에 손해보다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다.

17) 전윤경(2016)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부서로 인지부서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설치되어 있다.

마. 엄중한 책임추궁 제도 도입 및 강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후규제로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후규제 방안으로 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임원의 위법행위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모회사 역시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나 그 주주 또는 모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다. 현행 상법(제403조)은 주주의 대표소송제만 허용하고 있어 자기회사의 주주가 자기회사의 임원에 대한 소송만이 가능하다.¹⁸⁾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면 피라미드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집단 내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거래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생기는 것이다. 인접 국가인 일본도 2014년에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증권 분야에만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집단소송제는 대기업집단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분야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실제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제가 피라미드형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데 효과적이었고, 이는 대기업집단을 해체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1966년 이후 소유와 지배가 괴리된 기업에서 사익편취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되

18) 주주의 대표소송은 회사의 임원이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식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었을 때 집단소송제로 인해 지배주주는 막대한 손해배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 처벌의 성격을 띤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 몇 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기업집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용범위를 대기업집단의 모든 불공정행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2항에 의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30%(비상장의 경우 20%) 이상인 계열사이다. 즉,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는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30%(비상장의 경우 20%) 이상인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30%(비상장의 경우 20%) 미만인 계열사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수일가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을 넘지 않도록 해당계열사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낮게 조정한 뒤 사익편취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2013년 10월 이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122개 기업들의 경영 변동사

항을 조사한 재벌닷컴에 따르면, 규제대상 대기업집단 계열사 122개 중에서 2014년 1월 20일까지 모두 21개 기업이 합병이나 총수일가 지분 감소 등의 수법으로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앞에서 언급한 불공정행위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로 규제대상을 확대해야한다.

사.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규제 근거 개정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제23조 1항의 7)는 제5장(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에서 다루어지면서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위법성 판단에 있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지원행위 요건'과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부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는 입법을 위한 논의 당시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기 위해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포함시키려고 하였으나 재계의 반발로 제5장으로 이동되었다. 만약 최초로 부당지원행위를 제3장에 포함시켰으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지원행위 요건'만 충족시키면 위법성이 입증된다. 따라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를 제3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재고려해야한다.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2016),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결과.”
- 김명규·김성태(2010), “동태 CGE 모형을 이용한 한국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58(3), pp. 75-119.
- 김배근(2012), “기술혁신은 고용 없는 성장을 야기하는가?,” *경제학연구*, 60(3), pp. 5-54.
- 김승일·신영수·이봉근·박준영(2015), “내부거래 등 공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장은공익재단.
- 김승일·홍의경(2012),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장은공익재단.
- 라정주·한원석(2017), “헌법 제119조-공정경쟁을 중심으로,” 파이터치연구원.
- 박상인·복홍석·백미연(2014), “일감몰아주기가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장은공익재단.
- 이건목·이정념(2010), “불공정행위의 현황과 대책-전속고발권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22(2), pp. 9-46.
- 이동수(2011), “고용 없는 성장에 있어서 기술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28(1), pp. 167-187.
- 전운경(2016), “공정거래법의 기존 공적 집행 체제의 한계 및 실효성 확보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53호, pp. 176-213.
- 최희갑(2006), “Zipf 분포에 기초한 한국의 기업 규모 분포 분석,” *통계연구*, 11(2), pp. 73-95.
- 통계청(2015), “2014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
- 표학길·전현배·이근희(2015), “2015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한국생산성본부.
- Baek, J. S., J. K. Kang, and I. Lee(2006), “Business groups and tunneling: evidence from private securities offerings by Korean chaebols,” *Journal of Finance*, 61(5), pp. 2415-2449.

- Bertrand, M., P. Mehta, and S. Mullainathan(2002), "Ferretting out tunneling: an application to Indian business group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1), pp. 121-148.
- Buysschaert, A., Marc Deloof, M. Jegers, and A. Rommens(2008), "Is group affiliation profitable in developed countries? Belgian Evidence," *Corporate Governace*, 16(6), pp. 504-518.
- Chang, S. J. and J. Hong(2000), "Economic performance of group-affiliated companies in Korea: intragroup resource sharing and internal business transactions," *Academy of Management*, 43(3), pp. 429-448.
- Chari, V. V., P. J. Kehoe, and E. R. McGrattan(2000), "Sticky price models of the business cycle: can the contract multiplier solve the persistence problem?," *Econometrica*, 68(5), pp. 1151-1179.
- Garcia-Santana, M. and J. Pijoan-Mas(2014), "The reservation laws in India and the misallocation of production factor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66, pp. 193-209.
- Guner, N., G. Ventura, and Y. Xu(2008),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size-dependent policies," *Review of Economic Dynamics*, 11(4), pp. 721-744.
- Khanna, T. and Y. Yafeh(2007), "Business groups in emerging markets: paragons or parasit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5(2), pp. 331-372.
- Lucas, R. E.(1978), "On the size distribution of business firms," *Bell Journal of Economics*, 9(2), pp. 508-523.
- Yiu, D. W., Y. Lu, G. D. Bruton, and R. E. Hoskisson(2007), "Business groups: an integrated model to focus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4(8), pp. 1551-1579.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행일 : 2017년 6월

발행처 : (재)파이터치연구원

주 소 : (04511)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길 16(AIA 타워 4층)

전 화 : 02-6190-8975

팩 스 : 02-6190-8979

인 쇄 :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π -TOUCH
P_i-TOUCH INSTITUTE

(재)파이터치연구원. (우:04511)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길 16 AIA타워 4층
TEL : 02-6190-8975 , FAX : 02-6190-8979